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2013. 12

전명목

서 언

복지재원의 조달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 지원 수단으로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원 확보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법인소득세의 국제 경쟁력 유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오직 개별 세목의 관점만 반영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개인소득세에 관한 정책제안은 오직 개인소득세 부담구조의 형평성만을 고려한 가운데 제시되었고 법인소득세 정책 역시 투자 등 법인 관련 활동만을 고려하였다. 과연 개인소득세제와 법인소득세제 부담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원 이동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세원 혹은 법인소득세 세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사업형태 결정에 있어 세부담은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세제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소득 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의 소득수준별 보상형태(사업소득, 배당소득, 임금과 배당 혼합소득)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임금소득을 우대하고 있었다. 세부담이 가장 높은 소득은 법인 배당소득이었으며, 소득이 약 1억원 수준을 초과하면 법인전환을 통한 임금/배당소득 혼합형태가 가장 낮은 세부담을 보인다. 소득 1억원 이하에서는 소득형태별 우열이 소득구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는 각종 소득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종합소득기준 부과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는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으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 이동 유인이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 구조로 인해 실제 소득 이동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분

석에서도 개인 소유주가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격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가 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법인 자산규모의 2.89%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결정에 있어 두 세목 간 세율 격차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고소득 자영업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확대에 대해 사업체의 법인 전환 혹은 기존 법인으로의 자산(혹은 소득)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러한 세부담 축소 기회가 없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은 크게 훼손된다. 또한 소득 이동은 세율 인상에 따른 기대세수도 줄어들게 하므로 보수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세원 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간 최고세율 격차 확대를 지양하는 등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전병목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오지연 연구원, 이은경 전문연구원과 자료와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홍유남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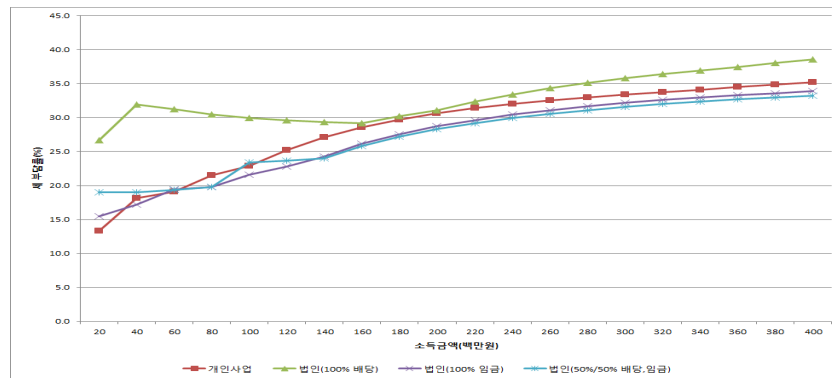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에 존재하는 세원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직접적인 세부담 주체의 차이(즉, 개인과 법인)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 독립된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체 형태는 자유롭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였을 때보다 법인 형태의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법인 전환, 자산 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분석은 상호 연관성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책의 초과부담 증가, 소득분배 등의 통계 왜곡, 세수추정의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이동으로 소득분배 관련 통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에서 법인소득으로 소득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 이동의 결과를 소득분배의 변화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의 법인부문 이동은 소득의 형태를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 Fringe benefits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소득격차를 실제보다 과소 표현할 가능성도 높다. 세수 측면에서도 세부담 축소를 위한 소득 이동으로 실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적용구간 확대의 세수증대 효과는 자영업자들의 법인 전환(혹은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을 통해 일정 부분 회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수효과는 기대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세제

에서 소득 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가상의 소득수준별 보상형태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업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과 배당 각각 50% 보상형태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세제는 대체적으로 임금소득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사회보장 관련 세부담으로 인해 최종적인 세부담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하였다.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100% 순수 배당형태를 제외한 3가지 보상형태의 경우,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형태에 따른 일방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담 변화가 심했다. 이는 낮은 소득수준에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건강보험료의 종합소득기준 부과 등의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득이 약 1억원을 초과하면 전반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 유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최근의 법인부문 소득비중 증가의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률(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



주: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 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한편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원인은 저소득구간에서 나타나는 낮은 사업소득세 부담과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 조세제도만 고려하더라도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개인 사업이 유리한 소득형태가 될 수 있고, 낮은 거래 투명성으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개인사업체로 존재하는 것이 동 구간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득 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 존재가 실증적으로 개인과 법인 간의 소득 이동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과 법인부분의 소득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최고세율 격차를 이용하였다. 거시자료(국세청 통계)와 미시자료(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소득구조는 세부담 격차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자료 분석 결과 법인소득 비중은 세율 격차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 수 비중과 법인의 자산이익률은 그렇지 않았다. 세율 격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와 함께 신규 창업법인만을 분리해서(법인 수 비중 분석)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시자료 분석 결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는 소유자-경영자 형태의 법인의 자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부분 자산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법인부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세부담 증가에 대응하였다.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은 결국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동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런 경향은 법인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유자-경영인의 모든 법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유자-경영인 형태 법인의 경우 소유자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이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법인 (조정)자산규모의

2.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개별 세목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기대한 세수효과를 얻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를 확대시키므로 고소득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영업자들의 법인 전환 혹은 법인 소유자-경영인의 경우 자산 이동을 통해 소득세원을 법인으로 이동할 것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법인세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두 세목의 실효세율 차이만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변화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자산 이동으로 인해 나타난 개인소득의 변화는 소득구분의 변화이므로 궁극적인 소득분배의 변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지표 산정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세율 격차로 유도된 자산 이동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법인소득세수에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한계세율 결정에 있어 두 세목 간 세율 격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확대에 대해 사업체의 법인 전환 혹은 기존 법인으로의 자산(혹은 소득)이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16%p(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8%,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22%)에 이르는 세율 격차를 더 이상 확대하는 논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세목 간 소득 이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세수추정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득 혹은 자산 이동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수의 과대추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계획에서 세입의 과대추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이동의 존재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목 차

I. 서론	13
II. 세원 이동성의 개념	17
1. 세원 이동성의 정의	17
2. 세원 이동의 중요성	24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28
1. 노동소득 과세제도	29
2. 자본소득 과세제도	35
3. 법인과세제도	40
4. 소득 이동의 인센티브	45
5. 소득 이동의 방법	51
가. 부채-자본 비율의 변화	52
나. 사업체 형태 변화	53
다. 노동에 대한 보상방법의 변화	56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58
1. 소득 이동 인센티브의 변화	58
2. 선행연구	66
3. 실증분석의 방법	68
가. 거시자료 분석	69
나. 미시자료 분석	81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91
참고문헌	96

표목차

〈표 II-1〉 다양한 유형의 소득 이동과 실증적 증거	22
〈표 III-1〉 종합소득세율 변화(귀속소득 기준)	30
〈표 III-2〉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31
〈표 III-3〉 근로소득공제의 규모 변화	31
〈표 III-4〉 근로소득공제제도	32
〈표 III-5〉 소득 유형별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33
〈표 III-6〉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모 변화	33
〈표 III-7〉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요율(2013)	35
〈표 III-8〉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이	37
〈표 III-9〉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2011)	39
〈표 III-10〉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신고 추이	39
〈표 III-11〉 법인세율 변화(귀속소득 기준)	42
〈표 III-12〉 자산 규모별 법인의 세부담 분포(2011년 신고기준, 법인 수 기준)	43
〈표 III-13〉 자산 규모별 법인의 세부담 분포(2011년 신고기준)	44
〈표 III-14〉 법인세 신고법인의 자산규모별 당기순이익 수준 (2011년 신고기준)	46
〈표 IV-1〉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59
〈표 IV-2〉 개인 영업잉여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71
〈표 IV-3〉 법인소득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73
〈표 IV-4〉 법인소득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74
〈표 IV-5〉 법인사업체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76
〈표 IV-6〉 법인사업체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77

〈표 IV-7〉 자산이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80
〈표 IV-8〉 자산이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81
〈표 IV-9〉 분석기간 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82
〈표 IV-10〉 사업체 패널자료 기초 통계량	83
〈표 IV-11〉 자산이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85
〈표 IV-12〉 임금수준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86
〈표 IV-13〉 자산수준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89

그림목차

[그림 III-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29
[그림 III-2] Gross-Up 제도	36
[그림 III-3] 법인세 계산절차	41
[그림 III-4]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세부담률	48
[그림 III-5]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률(사회보험료 포함) ...	49
[그림 III-6] 소득형태/소득수준/소득과약률에 따른 세부담률 (사회보험료 포함)	51
[그림 IV-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추이	62
[그림 IV-2] 영업잉여 중 개인의 비중과 개인-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theta_{\max} - \tau_{\max}$)	63
[그림 IV-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한 소득-법인 간 세율 격차 비교	65
[그림 IV-4] 개인-법인 간 소득세율 격차와 법인화 관련 세율변화 추이 ·	66

I. 서론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두 세목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고 세입 측면의 역할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에 이어 제2, 3의 세원에 이르는 큰 세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¹⁾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 두 세목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각 세목별로 분리된 접근에 그치고 있다. 즉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관점에서 부담구조와 세수 등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법인소득세 역시 개별 세목의 관점에서 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검토되었다. 새로운 자원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비과세·감면의 축소도 개별 세목의 관점에서 그 부담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정비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소득 획득자의 성격 규명에 따른 구분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활동에 대한 과세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소득 획득의 당사자인 개인 혹은 법인이 완전히 구분된 개체가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호 변화할 수 있는

1) 그러나 대규모 법인의 부담 증대가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 증대라는 주장에 대해 법인소득세 귀착(corporate tax incidence) 관련 문헌들은 자본(즉 주주)과 노동(근로자)의 형태로 귀착을 분석하고 있어 소득수준별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소득계층별 귀착은 대법인 주주의 소득 분포와 노동에의 영향 정도, 자본의 이동성, 수입재화의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히려 개인소득이 높은 중소기업 대주주가 제외되어 수평적 형평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상당하다.

개념임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정확한 이해와 유효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상호 독립적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논의보다 두 세원 사이의 관계성까지 감안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두 세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이 원소득세제를 채택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Gordon, Roger and Joel Slemrod, 1998;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 2012;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 2010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세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크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요구 등으로 인해 동 세목의 과세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두 세목, 세원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에는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로 개인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개인들의 행태 변화(Behavioral change) 혹은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낮은 한계세율로 인해 개인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 노력을 줄여서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전병목, 2006).²⁾ 그리고 이러한 세수입 증가는 순수한 이용 가능 재원의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의 세원 이동을 허용할 경우, 세율 변경으로 인한 순수 세입 증가는 기존의 연구보다 줄어들게 된다. 즉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개인의 소득 관련 행태 변화와 함께 기존 법인을 통한 소득 획득자들의 소득 획득경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법인을 통한 소득 획득보다 직접적인 개인 소득 획득이 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법인소득에서 개인소득으로의 세원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세원 이동은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이 크게 낮아진 1980년대 미국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Gordon: 1990 등). 그러므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두 세목 간 실질세율 격차로 인해 세원 이동이 발생하였는지, 만약

2) 소득세 부담변화에 대해 기존의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 뿐만 아니라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세부담 회피 노력까지 포함하기 위해 과세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증하는 것은 향후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원 이동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개별 세목 차원의 정책결정에서 탈피하는 근본적인 정책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변화 가능성이 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의 세원 이동을 직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두 세목의 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체 형식 변화(법인 v.s 개인사업), 자산 이동을 통한 소득 이동, 자산 이동 없는 소득 이동 등 다양한 소득 이동 방식을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세원 이동 유무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래 개인 정책변화의 영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법인소득세율에 대한 정책에서 자본의 이동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세율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개인소득세율은 소득격차의 확대에 대한 대응과 재원조달을 위해 인상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자본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제약이 줄어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의 법인세율 유지 혹은 인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에 대응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누진적 구조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개별적 논의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어 개인과 법인 간 세원 이동을 유발 혹은 강화시킬 수 있다. 각 세목 간 세원 이동은 세제개편의 순세수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이의 유무에 대한 검증과 그 크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법인소득세제와 개인소득세제 변화가 야기하는 세원 간 이동 유무와 그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율 등 조세 관련 변수가 개인의 사업형태 변화 혹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인소득세제 및 법인소득세제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세원 이동성에 대한 개념 정의이며 제Ⅲ장은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를 분석하여 세원 이동에 대한 경제

적 인센티브가 있는지 분석한다. 제Ⅳ장은 우리나라 세제에서 제공하는 두 세목 간 세원 이동 인센티브가 실제적인 세원 이동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며, 제Ⅴ장은 결론이다.

II. 세원 이동성³⁾의 개념

1. 세원 이동성의 정의

세원 혹은 소득 이동성에 대한 정의는 Alstadsater and Jacob(20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절은 Alstadsater and Jacob(2012)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세원 혹은 소득 이동성은 조세제도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즉,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과 여가에 대한 상대가격 구조와 함께 실질소득 수준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행위는 조세가 없을 때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조세로 인한 행태 변화(Behavioral change)라 한다.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노동시간 등 각종 의사결정 변화를 통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데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 외에 발생하는 비용(즉, 경제주체 효용의 감소 - 조세수입)을 초과부담(Excess Burden)⁴⁾이라 한다. 조세정책에서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러한 초과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 변화는 개인소득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납세자인 법인들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변화가 법인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는 개인소득세의 변화가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법인들의 배당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Chetty and Saez; 2005).

조세부과 혹은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적법성의 관점에서 적법한 행위(Tax avoidance)와

3)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세원 이동성(Tax base Shifting)과 소득 이동성(Income shifting)을 동일 개념으로 이용한다. 분석대상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므로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는 Marshallian demand function하에서 정의된 Harberger Triangle, 즉 dead weight loss와 같은 개념이며 보다 정확히는 소득효과를 제거한, 즉 Hicksian demand function(Compensated demand function)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Tax evasion)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Tax Evasion이라고 한다. Sandmo (2005, p. 545)에서는 다음과 같이 Tax evasion을 정의하고 있다.

“When the taxpayer refrains from reporting income from labor or capital which is in principle taxable, he engages in an illegal activity that makes him liable to administrative or legal action from the authorities. In evading taxes, he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his actions being detected”

그러므로 실제 연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Tax evasion을 어떻게 규정하고 찾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적법한 행태 변화는 Tax avoidance로 정의하고 있다. Sandmo(2005, p. 545)에서도 tax avoidance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onsists in exploring loopholes in the tax law. In engaging in tax avoidance, the taxpayer has no reason to worry about possible detection; quite contrary, it is often imperative that he makes a detailed statement about his transactions in order to ensure that he gets the tax reduction that he desires”

tax avoidance에는 주어진 세법 내에서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들의 세 부담 축소를 위한 많은 행위가 포함된다.

조세제도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는 실제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즉, 조세의 변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상대가격구조 변화를 야기하여 납세자들이 소비구성, 노동공급, 투자결정 등을 변화시킬 때 이는 실제적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다.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에 대한 가격이 낮아져 노동공

급을 줄이고 여가소비를 높이게 되고, 담배나 주류에 대한 세율 인상은 동제품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세제도 변화가 실제적인 행태변화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 입법화되는 2013년 초반까지 겪었던 부동산 거래 공백 상태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실질적인 행태 변화(즉, 거래 연기)를 유발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세제도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원 혹은 소득 이동(Income shifting)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의 종류, 과세구간, 과세국가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이동은 적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실질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소득 이동은 소득에 대한 분류상의 변화일 뿐이지 근로활동, 투자 등 실질적인 행태변화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일 때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고소득층의 세전 노동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소득 감소에는 동 계층의 노동공급 감소 등 실질적인 행태 변화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 노동 소득의 감소를 근로에 대한 보상체계 구성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기업주이면서 근로자인 개인은 자신에 대한 보상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노동공급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급여를 적게 지출하고 배당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⁵⁾ 이러한 보상구조 변화를 통해 기업주이면서 근로자인 개인의 세후소득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으로의 전환이 세부담을 얼마나 낮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각종 Fringe benefits, stock options 등의 활용을 통해 동일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또한 이익을 법인의 유보소득으로 보유하는 것도 소득의 시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법인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소득유형으로의 전환 옵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세부담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태 변화〉

- 불법적 행위 → Tax evasion → Tax evasion is illegal activit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payments. The taxpayer attempts to hide his or her actions from the tax collector(Sandmo, 2005)

- 합법적 행위 → Tax avoidance → Tax avoidance is legal activit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payments. The reduction in tax liability from tax avoidance behavior is dependent on the taxpayer reporting his or her actions to tax collector(Sandmo, 2005)
 Real effects of tax avoidance activity are behavioral responses that lead to changes in consumption composition, labor supply, investment portfolio, or real investments. Various tax avoidance strategies have different degrees of real effects
 Income shifting is the process of transferring income between income categories and tax brackets in order to reduce total tax payments. It is legal tax avoidance and does not involve immediate real effects: it is purely a relabeling of existing income.

- 실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tax avoidance 행위들은 불법과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료: Alstadsater and Jacob, "Income Shifting in Sweden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3:12 rules,"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12.

소득과세에서의 세원 이동, 즉 소득 이동성에 대해서는 Stiglitz(1985)가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의 변화, 소득구분의 변화, 납세자의 변화가 그것이다.

먼저, 시간의 변화 측면에서 정의되는 소득 이동은 거래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득 발생 및 납부할 세금의 현재가치를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배당소득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업들은 동 시점 이전에 많은 배당을 시행하여 세율 변화 이후에는 배당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배당시점 조정은 동일 소득자의 소득흐름을 변화시켜 총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최근 나타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정책 제시도 부동산 처분-취득을 늦추게 되어 거래 동결현상(Lock-in effect)을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수도 줄어들게 하였다.

두 번째로, 소득구분의 변화는 납세자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항목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항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다국적회사가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도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노동소득이 있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소득항목으로 전환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인 1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의 법인화 여부에 따라 그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혹은 양도소득) 등의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납세자 간의 변화는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의 소득을 한계세율이 낮은 납세자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예는 가족이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족 구성원 간 자산이나 소득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경제에서는 가족 간의 소득 이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세수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개별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Slemrod(1990, 1995)에 따르면 예상되는 조세제도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납세자 반응에 일정한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거래의 시점 조정을 통한 시점 간 소득 이동이며 두 번째는 소득의 성격 변화를 통한 세부담 감소 노력이다. 마지막

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공급, 투자 등의 변화와 같은 실제적인 행태 변화이다. 또한 조세제도 변화는 불법적인 조세회피(Tax evasion)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높이는 효과도 있다. 납세자들이 세부담 증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나타나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노동공급, 투자 등 실제적 행태 변화만을 분리하여 유의미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Saez, Slemrod and Giertz, 2012).

〈표 II-1〉 다양한 유형의 소득 이동과 실증적 증거

소득 이동의 유형	실증적 증거
소득귀속시기의 조정: 거래시기를 조정하여 납부세액의 현재가치를 줄이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세율 인상 예고는 세율변화 이전의 배당을 늘리는 효과 Auerbach and Hassett(2002, 2006, 2007), Chetty and Saez(2005, 2010), Poterba(2004), Bond, Devereux and Kelmm(2007), Kari, Karikallio, and Pirttila(2008, 2009), Alstadsater and Fjarli(2009), Jacob and Jacob(2012) - 자본이득과세는 자산거래의 동결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본이득 실현 시까지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 Burman, Clausing, and O'Hare(1994), Burman and Randolph(1994), Burman and Ricoy(1997), Goolsbee(2000), Ivkovic, Poterba, and Weisbenner(2005), Ayers, Li, and Robinson(2008), Jacob(2010, 2011) - Shell company 설립을 통한 조세부담 이연 Alstadsater, Kopczuk, and Telle(2011)
소득유형의 조정: 고율과세되는 소득유형을 저율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wner-Manager의 임금-배당 선택 Gordon and Mackie-Mason(1994), Gordon and Slemrod(2000), Fjarli and Lund(2001), De Mooij and Nicodeme(2008), Pirttila and Selin(2011) - 임금 대신 배당지급을 위한 회사 설립 Romanov(2004) - 기업의 법적형태 조정을 통한 세부담 변화 Ayers, Cloyd, and Robinson(1996), MacKie-Mason and Gordon(1997), Goolsbee(1998, 2004),

〈표 II-1〉의 계속

소득 이동의 유형	실증적 증거
소득유형의 조정: 고율과세되는 소득유형을 저율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조정	Gentry(1994), Egger, Keuschnigg, and Winner(2009), Thoresen and Alstadsater(2010), Edmark and Gordon(2012) - 개인소득과세에서 법인과세로의 소득 이동을 위한 기업소유구조 변화 Alstadsater and Wangen(2010), Alstadsater, Kopczuk, and Telle(2011) - 저율과세 지역으로의 소득 이동을 위한 그룹 내 기업 간 이전가격 조정 Bartelsman and Beetsma(2003), Mintz and Smart(2004), Huizinga and Laeven(2008) and Clausing(2009) - 저율과세 지역으로 소득 이동을 위한 Thin capitalization (intra-group loans and interest rates) Moen et al(2011), Lodin(2011a) -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율이 다를 때 상속을 가족 내 증여로 조정 Nordblom and Ohlsson(2006)
납세자 조정: 고세율 납세자로부터 저세율 납세자로의 소득 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축소	- 세율이 낮은 가족으로 소득 이동 Agell, Englund and Sodersten(1998, pp. 25-26) - 가족구성원 간 자산소유 조정 Stephens and Ward-Batts(2004), Ohlsson(2007)

자료: Alstadsater and Jacob, "Income Shifting in Sweden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3:12 rules,"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12.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Stiglitz(1985)는 그 이유 중 하나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와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원 혹은 소득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먼저 납세자들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조세 인센티브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이동 시 적용되는 세율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커야 세부담 금액 감소라는 명확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세회피 전략의 기대이익, 즉 세부담 감소액이 세원 혹은 소득 이동 행위를 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세 번째는 납세자가 이러한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들은 앞서 제시한 조세부담 축소 전략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혹은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소득유형의 재조정 혹은 세금 축소를 위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영업자와 법인의 Owner-Manager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므로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세금 축소를 위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일반 회사의 Owner-Manager는 법인소득의 배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소득을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제도와 이용 가능한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조세제도에 대한 무지와 전문성 부족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상의 4가지 조건, 즉 경제적 유인효과, 실질적인 이득, 조세회피 기회와 회피전략에 대한 이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납세자들은 소득 이동을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 최근의 실증분석들에 의하면 조세회피에 있어 상당한 heterogeneity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조세회피 기회의 부족, 기존의 관성, 관련 정보와 비용, 기타 특징들 때문이다(Kleven et al., 2011; Chetty et al., 2009; Finkelstein, 2009).

2. 세원 이동의 중요성⁶⁾

소득 이동을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는 Gordon and Slemrod(1998)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 및 사회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6) Alstadsater and Jacob(2012)와 Gordon and Slemrod(1998)을 요약

- 효율성 문제(Efficiency effects)
- 소득분배 문제(Distribution effects)
- 통계의 왜곡(Misleading statistics)
- 세입규모의 감소(Revenue effects)

효율성⁷⁾의 문제(Efficiency effects)는 조세부담 축소를 위해 소득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즉 비생산적인 행위를 위해 자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 효율성 손실이 발생한다. 만약 납세자들이 이 시간 혹은 비용을 노동공급을 늘리거나 레저에 이용하였다면 전반적인 후생이 증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득분배의 문제(Distribution effects)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원 혹은 소득 이동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고 관련 정보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소득 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수직적 형평성⁸⁾(Vertical equity)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한 소득그룹에서 소득 이동 전략의 활용이 특정한 일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차이와 조세관련 지식의 부족은 소득 이동에 대해 알고 있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의 조세회피 행위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 결과 동일한 소득그룹 내에서도 납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국 세후소득 수준도 달라지게 된다.

소득 이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세 번째 효과는 통계의 왜곡이다. 예를

7) 조세이론에서 효율성은 조세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 변화가 야기하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최소화하는 것임.

8) 조세이론에서 형평성은 납세자 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 대상 납세자에 따라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형평성은 납세능력이 높은 납세자가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세전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전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세부담액도 커야 함을 의미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비슷한 납세능력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세전소득이 동일한 납세자는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들면, 배당세율의 인하는 법인들의 소득신고 및 배당액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만을 평가하면 세율 변경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배당소득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소득의 증가가 사실상 Owner-manager의 조세회피 전략, 즉 개인의 노동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전하시킴으로 인해 일어났다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 스웨덴의 과거 배당소득세율 인하 경험에서 개인소득세수는 감소하고 법인소득세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⁹⁾ 그러므로 조세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세율의 이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유사부문을 포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분석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 이동성의 변화를 포함하기 위해 일정 시계열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Slemrod(1995)가 지적하였듯이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에 대한 왜곡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 비교분석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균형의 증가는 상당부분 시간에 따른 소득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상의 결과가 항상 실제 소득 불균형의 변화가 아닐 수 있다.¹⁰⁾

네 번째 효과는 소득 이동으로 인한 세입 감소이다. 세입 감소 규모는 조세시스템의 구조와 소득 이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세율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은 tax evasion 등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세입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세율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입을 일으키게 된다. 조세제도 변화의 세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 대상 세율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 세율까지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특정 세목이나 그룹에 초점을 맞춘 효과 분석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Owner-manager 형태의 법인이 많을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영향분석은 반드시 두 세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득 이동으로 인한 후생효과는 세율 간의 이동이

9) Alstadsater and Jacob(2012)

10) 이는 미국에서 나타난 1980년대 소득세 한계세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법인부문에서 개인부문으로 상당한 소득 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별도의 통제장치가 없는 횡단면 분석에서는 소득분포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II. 세원 이동성의 개념 27

냐 혹은 동일 세원 내에서 시점의 이동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소득이 완전히 조세 부과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새 소득 획득자에 따라 후생효과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게 되면 동 소득은 완전히 소득세원에서 제외되지만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공제제도를 허용하는 소득세제하에서 보다 많은 소득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Kopczuk(2005)이 주장하였듯이 한계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소득 이동을 줄일 수 있다.

Ⅲ.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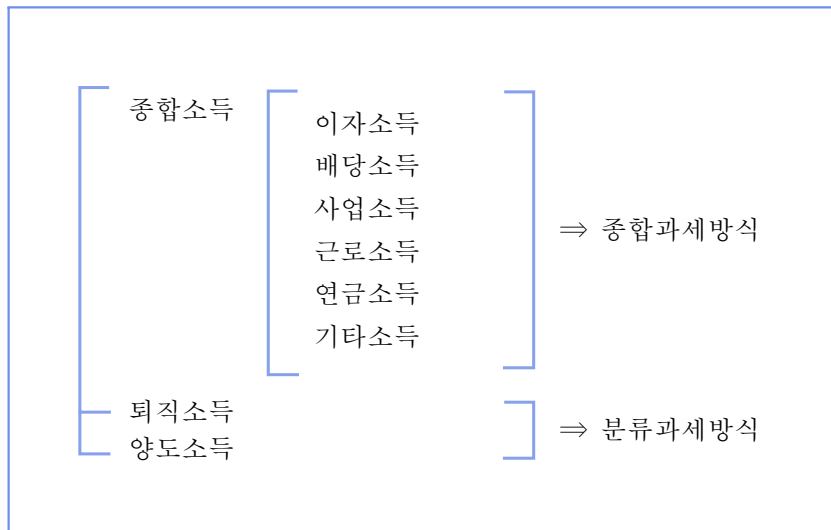
소득세원, 즉 소득 이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존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한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면 소득유형의 변화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려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의 소득유형은 크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자본소득의 경우 소득 획득 단계에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소득에 대한 주주에의 분배이므로 소득 획득 단계에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인의 존재는 해당 소득의 세부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득유형에 따른 세부담 변화도 나타난다. 노동소득의 경우 임금 여부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부담을 낮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소득의 경우 다양한 공제를 통해 사업소득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추가적인 사회보험 부담을 담당하고 있다. 자본소득 중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모두 과세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존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소득유형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추가적인 사회보험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높은 요율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과세대상에서도 종합소득 7,2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외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소득형태별 세부담 차이는 자신의 소득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Owner-manager에게 소득 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1. 노동소득 과세제도

우리나라 개인소득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체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다. 노동소득인 근로소득과 일부 노동소득인 사업소득 역시 종합과세제도하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표면적인 과세차등은 없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림 Ⅲ-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종합소득과세의 요율은 2013년 기준 6~38%의 5단계 누진구조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과표구간 3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 38%구간은 2013년부터 신설되었다.

〈표 Ⅲ-1〉 종합소득세율 변화(귀속소득 기준)

(단위: %)

과표구간	2008년	2009년	2010~2012년	2013년
~ 1,200만원	8	6	6	6
~ 4,600만원	17	16	15	15
~ 8,800만원	26	25	24	24
~ 3억원	35	35	35	35
3억원 초과	35	35	35	38

노동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1년 귀속 기준 총급여는 437.8조원에 이르나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161.8조원으로 전체 급여액의 37.0%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합되어 있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액은 111.4조원이며, 그 중 75.5%인 84.1조원이 과세표준액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¹¹⁾ 구체적으로 2011년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총소득공제액은 271.4조원 수준인데 그 중 근로소득공제액이 138.7조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5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근로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일괄적인 공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 공제율은 소득의 5%수준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이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를 위한 것이다.

11) 물론 여기에도 종합신고자가 획득한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31

〈표 III-2〉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총소+근소) 과표 비율
	과세소득	과세표준	과표 비율	총 급여	과세표준	과표 비율	
1996	262,648	n.a	n.a	1,345,613	472,089	35.1	n.a
1997	263,301	201,077	76.4	1,482,893	497,952	33.6	40.0
1998	214,097	152,080	71.0	1,332,680	427,660	32.1	37.5
1999	246,763	176,641	71.6	1,370,133	402,067	29.3	35.8
2000	321,671	231,979	72.1	1,702,929	533,123	31.3	37.8
2001	364,054	287,920	79.1	1,911,214	617,562	32.3	39.8
2002	421,634	328,510	77.9	2,153,938	614,868	28.5	36.6
2003	452,239	349,292	77.2	2,288,675	671,217	29.3	37.2
2004	491,798	374,717	76.2	2,490,617	746,477	30.0	37.6
2005	541,033	417,387	77.1	2,793,723	835,198	29.9	37.6
2006	650,011	501,790	77.2	3,178,721	954,662	30.0	38.0
2007	771,241	599,381	77.7	3,248,093	1,120,322	34.5	42.8
2008	850,825	646,648	76.0	3,526,381	1,180,479	33.5	41.7
2009	902,257	666,667	73.9	3,695,706	1,213,182	32.8	40.9
2010	1,002,668	752,594	75.1	4,010,860	1,446,574	36.1	43.9
2011	1,114,464	841,090	75.5	4,378,384	1,618,404	37.0	44.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I-3〉 근로소득공제의 규모 변화

(단위: 명, 억원, %)

	2009년	2010년	2011년
수혜자	14,248,434	15,137,375	15,474,024
근소공제액(A)	1,216,002	1,296,808	1,386,985
총소득공제액(B)	2,401,483	2,516,320	2,714,262
A/B	50.6	51.5	51.1

〈표 III-4〉 근로소득공제제도

(단위: %)

2013년 귀속			
과세 급여	공제율	과세 급여	공제율
~500만원	80	3,000만~4,500만원	10
500만~1,500만원	50	4,500만원 초과	5
1,500만~3,000만원	15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우대가 존재한다.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액의 55%를 그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 세액공제로 인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에는 세액공제율의 격차가 존재한다. 2011년 귀속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은 11.0% 수준이었으나 근로소득자의 공제율은 14.2%로 3.2%p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2011년 귀속 기준 2.8조원으로 근로소득 산출세액인 20.8조원의 14.2%에 이른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차별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운용은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근로소득을 세부담 측면에서 우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우대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성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즉 소득 투명성이 높지 않아 실질 세부담이 낮은 사업소득과 투명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근로소득간에 나타나는 세부담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소득 이동은 소득 투명성 격차와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우대 정도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Ⅲ.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33

〈표 Ⅲ-5〉 소득 유형별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중소+근소 세액공제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1997	44,143	36,898	16.4	n.a	50,106	n.a	n.a
1998	33,530	30,156	10.1	n.a	43,472	n.a	n.a
1999	41,014	35,578	13.3	n.a	43,372	n.a	n.a
2000	54,448	48,031	11.8	n.a	60,770	n.a	n.a
2001	64,024	55,373	13.5	91,982	71,461	22.3	18.7
2002	66,946	57,453	14.2	84,914	69,334	18.3	16.5
2003	72,543	62,887	13.3	93,622	76,412	18.4	16.2
2004	79,263	69,438	12.4	108,388	89,131	17.8	15.5
2005	86,349	74,372	13.9	117,570	97,782	16.8	15.6
2006	104,631	92,324	11.8	137,473	115,664	15.9	14.1
2007	126,854	112,775	11.1	165,859	141,138	14.9	13.3
2008	132,583	117,298	11.5	167,148	141,821	15.2	13.5
2009	130,898	116,993	10.6	152,627	128,519	15.8	13.4
2010	148,443	131,782	11.2	182,936	155,863	14.8	13.2
2011	170,373	151,707	11.0	207,566	178,019	14.2	1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6〉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모 변화

(단위: 명, 억원, %)

	2009년	2010년	2011년
수혜자	8,533,081	9,234,075	9,924,404
근소세액공제액(A)	22,956	25,765	28,304
근소산출세액(B)	152,627	182,936	207,566
A/B	15.0	14.1	13.6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결정〉

-
- 1) 산출세액 ≤ 50만원,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0.55
 - 2) 산출세액 > 50만원, 세액공제액 = 27.5만원 + (산출세액 - 50만원) × 0.3
 - 3) 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는 다양한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사회보험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소득종류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존재할 때 종합소득액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합산 요율은 총 3.05~3.65%로, 이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0.55%이며 고용주가 나머지 2.50~3.10%를 부담한다.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은 가처분 근로소득을 낮추는 요인이며, 소득형태 변화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소득의 일정 부분이 정부의 과세행정에 포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산정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근로소득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사업소득에는 거래 투명성 부족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는 사업소득의 세부담을 근로소득에 비해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투명한 거래관행에서 유발된 조세회피 가능성은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소득유형 간의 소득 이동은 조세제도상 우대조항의 영향과 소득 투명성 차이로 인한 세부담 축소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표 III-7〉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요율(2013)

(단위: %, 백만원/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총요율	5.890	9.0	1.35~1.95	1.70	0.3858
근로자부담	2.945	4.5	0.55	0.00	0.1929
고용주부담	2.945	4.5	0.80~1.40	1.70	0.1929
소득상한	937.2	45.0	-	-	937.2

주: 소득상한은 소득증가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는 최대 소득수준이며 고용주 부담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요율이 적용되며 제시된 요율은 평균요율임.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액의 6.55%이므로 이를 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요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2. 자본소득 과세제도

자본소득 과세제도는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제도와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의 범주 안에서 일정 부분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¹²⁾ 이하일 경우에는 14% 세율의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인의 소득 획득 단계)와 소득세(법인소득의 주주 배분단계)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Gross-Up 제도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즉, 배당소득은 법인의 법인세 과세 후 이익을 배분한 것인데 소득을 배분받은 주주에게 다시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중복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주주에게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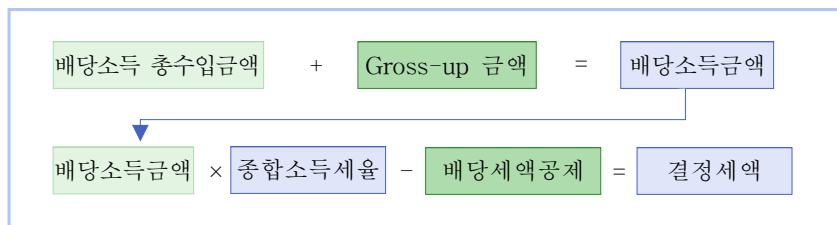
12) 2012년까지는 4천만원이 종합과세 기준소득이었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 귀속소득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이를 '귀속법인세'라 한다)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Gross-U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

-
- 1) 금융소득액 ≤ 2천만원
 - 소득세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 종결
 - 이자 및 배당금 지급자가 14%세율로 원천징수
 - 2) 금융소득액 > 2천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
 -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제도 적용
 - 비교과세 적용
 - 종합소득과세에 의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두 세액을 비교하여 높은 세액을 적용
-

[그림 III-2] Gross-Up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1 조세개요』, 2011.

2011년 귀속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총 52.1조원이며 그 중에서 이자소득이 37.3조원, 배당소득 14.7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소득자당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소득자는 5.1만명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자 395.7만명의 1.3% 수준이다.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로 그치지 않고 종합세율에 따라 누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비중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37

은 2011년 기준 19.6%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의 17.5%에 비해 2%p 이상 높아진 것으로 금융소득의 집중화를 보여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평균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9년 3.0억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소득층 중심의 금융소득 집중현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의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2010년에는 금융소득의 비중이 56% 수준을 보여주다가 2011년에는 53.0%로 하락하였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비금융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보다 고소득층으로의 금융소득 집중현상을 의심케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존재는 금융소득 중심 고소득자들의 실제 세부담이 노동소득자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의 높은 이동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개인소득자 단계에서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표 III-8〉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이

(단위: 십억원, 명, %)

	2009년	2010년	2011년
총금융소득(A)	50,193.2	50,153.5	52,075.7
- 이자소득	37,324.3	35,751.0	37,338.3
- 배당소득	12,868.9	14,402.5	14,737.4
종합과세금융소득(B)	8,793.4	9,852.7	10,207.4
- 소득자(명)	51,261	48,907	51,231
- 총소득(C)	15,551.9	17,313.7	19,264.1
- 평균 소득(백만원)	303.4	354.0	376.0
- 금융소득비율(B/C)	56.5	56.9	53.0
종합과세 금융소득 비율(B/A)	17.5	19.6	19.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또 다른 자본소득의 유형은 양도소득이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데 그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세율¹³⁾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은 대체적으로 매우 높게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어 필수 소비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있다.¹⁴⁾

Owner-Manager 등의 세원 혹은 소득 이동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양도소득은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이다.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에 대해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혹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수준은 중소기업 발행주식, 대주주, 보유기간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10% 세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기업 발행주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30%, 1년 이상 2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사업과 법인의 형태 변화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득 이동의 가능성은 중소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8%)에 비해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10%)은 매우 낮아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처분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야기하므로 지속적인 소득 이동을 위해 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2009년 1.2조원에 이르렀다가 경기침체로 0.4조원(2010년), 0.3조원(2011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주식 양도소득의 감소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은 비상장주식에서 나타났다.

13)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명목가격을 이용하므로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감안은 없다.

14) 비슷한 논리로 전·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가주택에 발생하는 암묵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Ⅲ.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3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09년 0.9조원 수준이었다가 2011년에는 0.2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0.3조원(2009년)에서 0.1조원(2011년)으로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 중에서 비상장주식 부분의 비중이 상장주식보다 월등히 높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Ⅲ-9〉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2011)

(단위: %)

구 분			세 율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대주주(1년 미만 보유)	30
상장 주식 (거래소, 코스닥)	대주주	중소기업 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 1년 이상 보유	20
		대기업 발행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자료: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2012.

〈표 Ⅲ-10〉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신고 추이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주식 합계	1,244,831	394,334	325,392
- 코스피 상장주식	299,516	115,488	122,667
- 코스닥 상장주식	32,647	8,887	539
- 비상장주식	912,668	269,959	202,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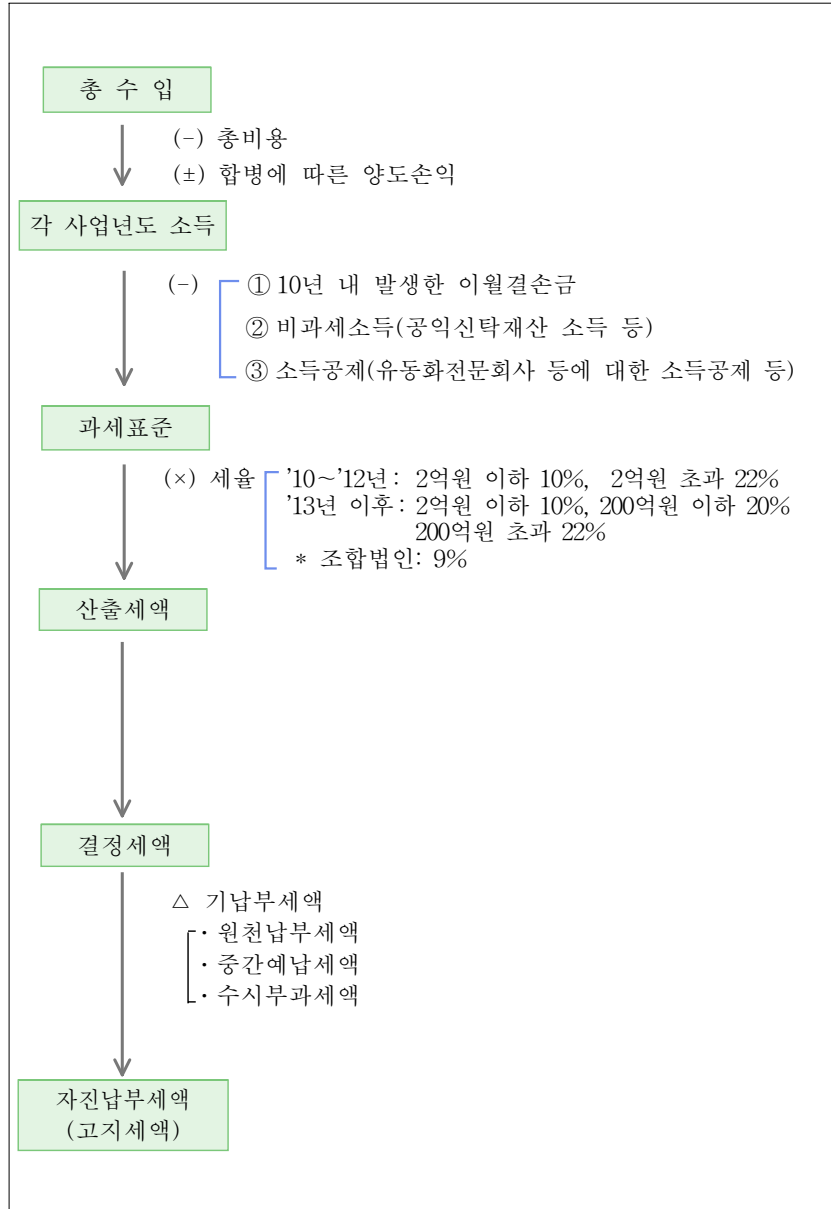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3. 법인과세제도

대표적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과세이다. 즉, 자본으로 형성된 법인은 그 운영 결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제에서 법인의 소득(즉, 익금)에 포함하는 항목은 자본 또는 출자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에선 사업수입, 자산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 평가차익,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산정된 익금에서 비용인 손금의 합계를 차감하고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을 조정하여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이 산출된다. 사업소득의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에 3단계 법인세율(10%/20%/22%)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법인세제는 소득유형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즉 법인이 익금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순자산의 증가를 야기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다음 비용을 공제하고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규모가 작은 법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누진적 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12년까지 2단계 구조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3단계 누진구조로 확대되었다.

[그림 III-3] 법인세 계산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1 조세개요』, 2011.

〈표 Ⅲ-11〉 법인세율 변화(귀속소득 기준)

(단위: %)

과표구간	2008년	2009년	2010~2012년	2013년
~ 2억원	11	11	10	10
2억 ~ 200억원	25	22	22	20
200억원 초과	25	22	22	22

개인사업 혹은 법인화의 선택에 있는 사업체는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다.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 경우, 이에 따른 위험도 커지므로 개인이 무한책임을 갖는 사업체의 형태보다 유한책임을 갖는 법인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부담 측면에서 사업형태(즉 개인사업과 법인)별 비교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성, 유한책임 등 비금전적 혜택을 포함하기 어려워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득수준의 법인 세부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현재의 소득과세 시스템으로 인해 높은 법인세부담은 개인사업체에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¹⁵⁾

비교적 소규모인 개인사업체와의 비교를 위해 법인 구분기준은 자산규모를 이용하였다. 개인사업체와 유사한 규모로 볼 수 있는 법인은 자산규모 5억원 혹은 10억원 이하에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동 자산규모의 법인의 분포를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중 과세표준이 양(+)의 값을 가지는 법인 비율이 각각 37.5%(자산 5억원 이하), 68.4%(자산 5억~10억원)에 이른다. 전체 법인의 신고실적과 비교하면 자산규모 5억원 이하 법인 중에서 수익성 있는 법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 신고법인 중 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의 비율도 38.5%에 불과해 전체 법인 평균 53.8%에 비해 낮은 편이다.

15) 법인화에 따른 장점인 유한책임, 자본시장에의 접근성 중 주주의 유한책임 부분은 기업주의 개인자산 담보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43

〈표 III-12〉 자산 규모별 법인의 세부담 분포(2011년 신고기준, 법인 수 기준)
(단위: 개, %)

자산규모	신고법인 (A)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B)	부담세액 (C)	B/A	C/A
5억 이하	223,502	122,572	83,799	86,157	37.5	38.5
10억 이하	72,975	56,203	49,949	49,897	68.4	68.4
20억 이하	59,740	47,882	43,441	42,921	72.7	71.8
50억 이하	51,625	41,832	37,894	36,642	73.4	71.0
100억 이하	23,666	19,075	16,984	16,029	71.8	67.7
200억 이하	9,624	6,766	5,694	5,283	59.2	54.9
500억 이하	9,189	6,324	5,220	4,957	56.8	53.9
1000억 이하	4,865	3,386	2,766	2,678	56.9	55.0
5000억 이하	4,398	3,085	2,487	2,477	56.5	56.3
5000억 초과	1,030	816	673	678	65.3	65.8
합계	460,614	307,941	248,907	247,719	54.0	53.8

주: 각 칼럼들은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부담세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신고 법인들의 수

수입금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살펴본 순이익률은 자산규모 5억 이하 법인은 8.0%로 전체 법인 평균치 6.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5억원 초과 1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순이익률은 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법인 수 분포와 결합하면 자산규모 5억원 이하 법인들은 당기순이익 혹은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법인 비율은 낮으나, 순이익을 실현한 법인들의 이익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즉 규모가 작은 법인들이 많이 존재하여 시장경쟁이 상당히 보이지만 동 범위 내 법인 간 격차도 매우 커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은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자산 규모 5억~100억원 규모의 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법인에 과세표준이 존재하나 그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동 자산 규모대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여 소수의 법인이 큰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법인이 낮은 이익률을 보이며 경쟁하는 구조이다.

과세표준에 대한 부담세액의 비율로 나타내는 평균실효세율은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누진적 세율구조가 의미하는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수익률에 큰 격차가 없다고 본다면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금액도 증가하고 누진세율구조에 따라 실효세율도 높아지게 된다. 각종 세액감면 혹은 공제가 실효세율을 소폭 변화시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실효세율 증가추세가 유지되어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는 규모는 자산 5억~10억원으로 9.6%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감면 및 공제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III-13〉 자산 규모별 법인의 세부담 분포(2011년 신고기준)

(단위: 십억원, %)

자산규모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순이익률	과세표준	부담세액	실효세율
5억 이하	67,978	5,447	8.0	2,956	307	10.4
10억 이하	87,854	3,825	4.4	3,557	342	9.6
20억 이하	133,184	5,578	4.2	5,670	587	10.4
50억 이하	221,113	9,612	4.3	10,082	1,231	12.2
100억 이하	199,892	9,651	4.8	10,281	1,501	14.6
200억 이하	118,212	6,782	5.7	7,227	1,155	16.0
500억 이하	174,335	11,077	6.4	11,635	1,927	16.6
1,000억 이하	153,529	11,057	7.2	11,173	1,901	17.0
5,000억 이하	370,663	25,876	7.0	24,995	4,382	17.5
5,000억 초과	1,923,377	140,498	7.3	140,478	24,628	17.5
합계	3,450,138	229,403	6.6	228,056	37,962	16.6

주: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수입금액) × 100, 실효세율 = (부담세액/과세표준) × 100

소득세원인 소득의 이동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소규모 법인이 순이익(혹은 과세표준)을 실현하므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의 변화는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전환을 야기한

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배당을 통해 배분할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존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조정하여 배분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Fringe Benefits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나타나는 보다 엄격한 회계관리 등의 부담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4. 소득 이동의 인센티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원인 소득의 이동을 위해서는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소득종류 간 세부담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이동을 통한 소득종류의 변경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제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운영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편의성을 위해 연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명목세율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담 차이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이 아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사이에 존재한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세부담 격차는 소득 투명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고용주를 통해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사업소득과의 세부담 균형을 위해 추가적인 감면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허용함으로써 유효세율을 낮추고 있다.

소득 이동의 원인인 소득종류 간 세부담 격차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나 일부분은 임금근로자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료 부담이 추가된다. 고

용보험은 임금근로자들의 실업 위험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임금소득과 고용주¹⁶⁾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소득 이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득형태별 세부담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소득형태를 분석하였다. 즉 개인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사업 소득, 사업체 법인 전환 후 임금소득 수령,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으로 수령, 법인 전환 후 임금소득/배당소득으로 각각 50%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소득형태의 변화는 사업체에 대한 소유주 지위의 변화 없이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임금-배당 각 50% 수령 방법은 법인 전환 시 채택할 수 있는 임금-배당의 혼합방안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소득범 위는 연간 2천만원~4억원이다. 이는 법인세 신고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규모로 자산규모 50억원 이하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이다.

〈표 III-14〉 법인세 신고법인의 자산규모별 당기순이익 수준
(2011년 신고기준)

(단위: 개, 십억원, 백만원)

자산규모	당기 순이익 법인 수	당기 순이익	평균 순이익
5억 이하	122,572	5,447	44
10억 이하	56,203	3,825	68
20억 이하	47,882	5,578	116
50억 이하	41,832	9,612	230
100억 이하	19,075	9,651	506
200억 이하	6,766	6,782	1,002
500억 이하	6,324	11,077	1,752
1,000억 이하	3,386	11,057	3,266
5,000억 이하	3,085	25,876	8,388
5,000억 초과	816	140,498	172,179
합계	307,941	229,403	7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16) 산재보험은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재해에 대한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이나 그 부담은 고용주가 담당하고 있고 개인별 임금보다 총급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47

소득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조세부담¹⁷⁾(소득세, 법인세 부담의 합) 수준은 임금으로 지급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에 허용하는 공제로 인해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4억원 소득금액에서도 평균 25.9%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소득형태는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최소 원천징수세율인 14% 세율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수령하면 최소 22.6%¹⁸⁾의 세부담을 지게 되며 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되어 세부담이 더욱 높아진다. 4억원의 소득을 법인을 통해 배당으로 받게 되는 세부담률이 33.0%¹⁹⁾까지 높아지게 된다. 그 외 개인 사업소득의 형태와 법인 전환 후 임금과 배당으로 소득을 나누어 받을 경우에는 두 가지 극단 사이의 세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득종류별 세부담 역전은 개인의 사업소득세 형태와 법인 전환 후 임금-배당 혼합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사업소득세 형태의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임금형태를 혼용하는 것이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업형태별 상대적 세부담 수준은 개인사업과 법인을 통한 임금/배당 혼용의 초기 역전사례를 제외하면 소득증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순수임금 형태와 임금/배당 혼용형태의 세부담 격차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데 이는 임금소득에 대한 공제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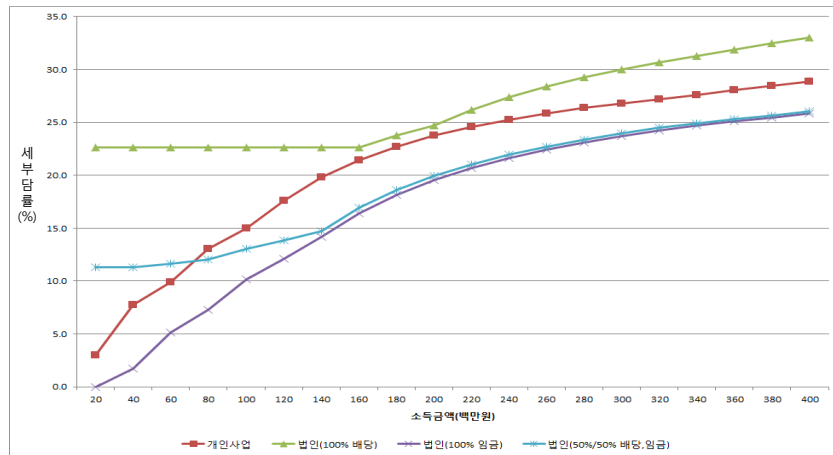
17) 분석의 편의상 국세액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는 제외하였다.

18) 법인세 낮은 세율 10%와 법인세후 이익에 부과되는 배당세율 12.6%(= 90%×14%)의 합

19) 법인세 중간 세율 20%와 배당세액공제, 누진적 개인소득세율을 감안하여 도출된 평균실효세율

[그림 Ⅲ-4]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세부담률

(단위:%)



주: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소득금액, 법인은 세전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소득형태별 조세부담을 분석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보험료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있지만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사회보험도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그 것이다. 임금에 부과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는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료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분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궁극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보험료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포함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할 경우, 소득형태에 관계없이 세부담 수준은 높아졌으며 소득형태별 세부담 수준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함에 따라 세부담은 증가하였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률을 보였던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부과로 배당소득 혹은 종합소득과의 부담 격차는 줄어들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정도, 즉 세부담의 누진구조는 크게 완화되었다.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III. 소득과세제도와 소득세원 이동 인센티브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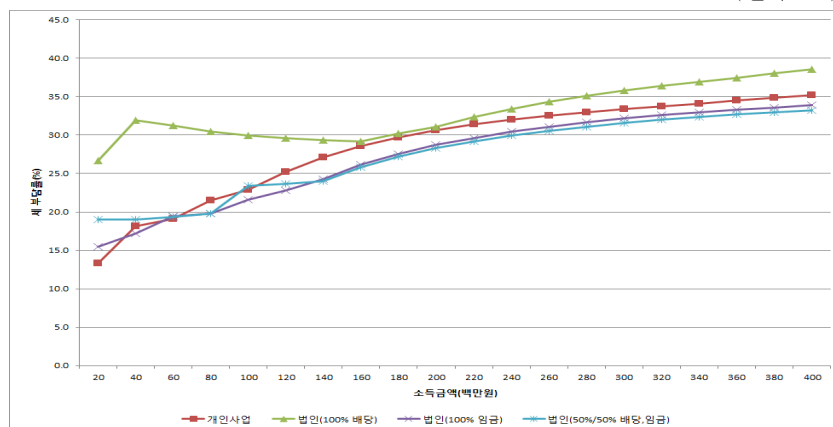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해 전반적인 누진구조는 소득세만 고려하였을 경우보다 약화되었다.

소득형태에 따른 세부담의 상대적 순위 역시 변화가 있다. 임금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배당 복합 보상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가장 낮은 세부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우호적인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인하요인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요인이 공존하여 사업소득-순수임금-임금/배당 혼용 형태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률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효과가 커지는 높은 소득에서는 임금과 배당을 혼용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을 보여준다. 본 분석에서는 예시적으로 임금과 배당에 각각 50%를 배분하였지만 배분비율 조정해 나가면서 가장 낮은 세부담 수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임금-배당 혼용형태의 보상에서 세부담 수준의 급증이 소득금액 1억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림 III-5]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률(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



주: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세제가 대체적으로 임금소득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사회보장 관련 세부담으로 인해 최종적인 세부담 수준은 변화가능함을 보여준다. 100% 순수 배당을 제외할 경우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어떤 소득형태에 따른 일방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법인형태의 경우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뚜렷해진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최근 우리나라 법인 수의 상대적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²⁰⁾

한편 법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조세부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대적 비중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높은 자영업부문의 종사자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요인은 소득과약률이다. 즉 위의 분석은 개인사업소득에 대해 100%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 투명성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관리 규정하에서 운영되는 법인부문의 투명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은 임금소득의 70~80%(안중석 외, 2010)에 머무르고 있다는 추정결과도 있다. 소득 투명성의 부족은 유사한 비중의 소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에 고려하였다.²¹⁾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을 포함할 경우, 사업소득의 형태가 세부담 측면에서 일관되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약률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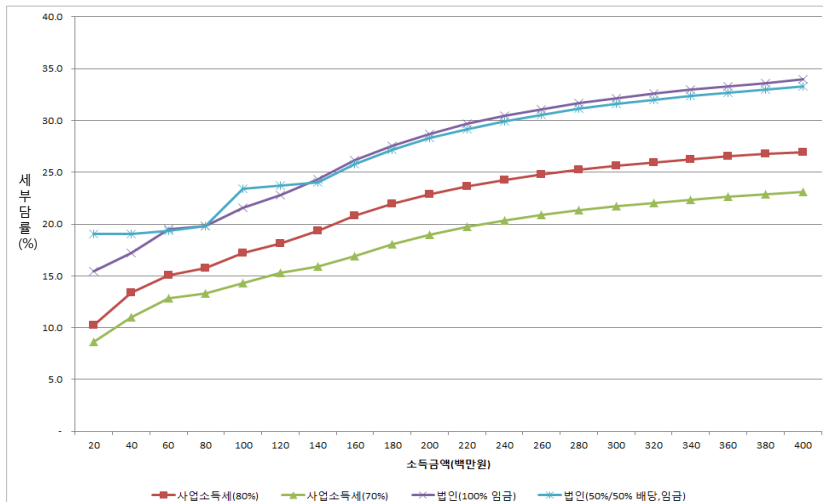
20) 법인 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제Ⅳ장 소득 이동의 실증분석을 참조

21) 낮은 소득 투명성의 문제는 개인사업체나 법인이라는 선택을 떠난 문제이지만 법인의 경우 각종 납세관련 의무가 추가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과약에 양호한 상황에 있음을 반영하여 소득과약이 정확하다고 가정하였다.

현실적 가정(70~80%)을 대입할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서 사업소득의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양성화된 거래수단을 많이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낮은 소득과약률로 인한 세 부담 격차는 소득증가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소득과약률에 대한 고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 근로자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림 III-6] 소득형태/소득수준/소득과약률에 따른 세부담률
(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



주: 사업소득세(80%)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80% 수준을 의미.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5. 소득 이동의 방법

소득 이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이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 이동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Gordon and Slemrod (1998)에서 잘 조사되어 있다. 본절은 Gordon and Slemrod(1998)의 내용

을 요약하였다. 소득 이동 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3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채-자본 비율의 변화, 사업체 형식의 변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이다. 그 중에서 부채-자본 비율의 변화와 사업체 형식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노동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다.

가. 부채-자본 비율의 변화

소득 이동의 방법 중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의 부채수준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법인의 부채 증가를 통해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 지출을 늘려 법인 과세소득을 개인 과세소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법인의 부채-자본 비율의 변화가 조세제도를 통해 법인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이론으로 Miller and Modigliani(1961)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조세정책이 기업재무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세율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MacKie-Mason(1990)과 Auerbach(1985)은 미래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손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동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현재 법인이 손실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현재 손실상태는 추가적인 차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법인의 차입결정에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차이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Gordon(1982)은 새로운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조세부담이 법인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부채보유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법인-소득세율의 격차에 명목이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법인-소득세율의 격차는 분석 가능 시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명목이자율은 상당히 변한 점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논문은 명목이자율이 높을 때 기업들의 부채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MacKie-Mason and Gordon(1990)은 TRA86(1986년 Tax Reform Act)이 기업의 부채-자본 비율을 상당히 높은 수준인 0.155까지 높일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조세개혁이 있었던 1986년 이후 실제 기업부채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세부담이 기업의 부채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Myers(1984)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I know of no study clearly demonstrating that a firm's tax status has predictable material effects on its debt policy”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1986년 이전 개인-법인 간 세율 격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옳지 않다. 1986년 이후 나타난 상대세율의 변화는 조세부담이 기업의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Amerkhail, Spooner, and Sunley(1988)은 1960년대 이자비용 제외된 법인이익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은 4.3%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17.1%, 1980~1987년간 동안에는 29.9%로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주요 조세개혁으로 인해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크게 낮아져 법인의 부채 확대 유인이 높아진 것과 일맥상통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이 높다.

나. 사업체 형태 변화

Gravelle and Kotlikoff(1989, 1993)에서 강조하였듯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격차는 사업체의 법인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부담만을 고려할 때 법인을 통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최종 세부담이 개인사업체 형태로 유지할 때의 세부담보다 작을 때 법인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과 비법인의 경우 조세부담 이외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직 법인만 부도 발생 시 유한책임을 지게 되며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실증적인 질문은 조세부담 격차로 인한 영향이 이러한 비조세적 영향을 넘어 사업체 형태를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Gordon and MacKie-Mason(1994), MacKie-Mason and Gordon(1997), and Goolsbee(1998) 등의 연구는 조세 인센티브로 인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개인소득세를 고정하고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대략적으로 총 사업자산의 0.5%가 법인부문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변화로 인해 총사업이익의 5%가 법인부문으로 이동하며 동시에 총손실의 5%가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 이동은 법인 및 비법인 분야의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다.

MacKie-Mason and Gordon(1997)은 1986 Tax Reform Act(TRA86)로 인한 비법인 부문으로의 소득 이동을 과소 추정하였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원인은 TRA86의 중요사항인 과세기반 확대와 비사업용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조치에 있다. 총사업이익 중 C형 법인(C corporations)²²⁾의 순이익 비중은 1980년 78.3%에서 1992년 59.4%로 낮아졌다. 반면 조세제도상 도관(pass-through entities)으로 취급되는 사업체의 사업이익은 이 기간 동안 21.7%에서 40.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담 격차가 사업체 법인화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이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납세자가 낮은 세부담을 추구할 때 이에 따라 사업체의 법인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득세원의 이동과 소득세수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법인화 결정 요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지만 세부담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Gordon and MacKie-Mason(1991), Goolsbee(1998)의 방법론을 따른다.

단순화를 위해 사업체는 법인화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소득(Y)을 획득하며, 동시에 법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비조세적 편익(G)을 얻게 된다. 비조세적 편익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법인화에 따른 자본시장 접근성의

22) 우리나라의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무상 취급을 받는 법인형태

유리함과 유한책임에 따른 편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조세적 편익은 사업체단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매기 소득은 다음과 같다.

$$I_c = G + Y(1 - t_c - (1 - t_c)t_e)$$

여기서 t_e 는 주식보유로 발생하는 배당소득(Equity income)에 대한 세율이며 t_c 는 법인세율, G 는 법인화의 비조세적 편익이다.

개인사업체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법인화의 이득(G)을 누리지 못하며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t_p)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매기 소득은

$$I_n = Y(1 - t_p)$$

개인의 사업체유형 결정은 세후소득의 크기에 따르며 법인화의 비조세적 편익(G)이 다음의 관계를 만족할 때 법인으로 운영하게 된다.

$$G > Y(t_c + (1 - t_c)t_e - t_p)$$

즉, $(t_c + (1 - t_c)t_e - t_p)$ 의 크기가 법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법인 유형의 결정은 사업소득의 귀속 세목(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의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t_e)은 개인소득세율(t_p)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시행하였다. 즉, 1996년 이전(혹은 본격 시행시기인 2001년 이전)에는 사실상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단일세율로 과세되었다. 이에 따라 법

인세 부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한 고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는 이를 특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허용하고 있었으며 공제의 정도도 기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_c + (1 - t_c)t_e - t_p) &= (t_c + (1 - \alpha t_c)t_p - t_p) \\ &= t_c - \alpha t_c t_p \\ &= t_c(1 - \alpha t_p)\end{aligned}$$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alpha < 1$ 이므로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폭보다는 법인세율의 변화 폭이 법인화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법인세율이 낮아지거나 개인소득세율이 높아지면 법인화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다. 노동에 대한 보상방법의 변화

소득 이동은 사업체의 법인화 여부 결정 이후에도 발생하게 된다. 즉, 사업체 설립 당시의 조세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법인화 여부를 결정하였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조세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에 따라 매년 법인-비법인 형태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행정적 비용이 존재한다면 다른 방식의 세부담 축소 방안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의 세부담 축소방안은 사업주 노력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경이다. 즉 가능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주요한 보상방식은 임금, 배당, 자본이득 등의 방법이 있다.

이때 개인과 법인의 소득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두 세율의 격차가 중요하다. 세후 소득수준의 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하기 때문이다. 법인을 통한 소득 배분 과정에 존재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면 두 세율의 격차는 세후

소득수준의 격차와 비례한다. 물론 배당소득 등 법인을 통한 소득배분에 대해 일정 부분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소득 귀속시기와 형태²³⁾를 조정할 수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을 이용하면 배당소득의 형태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이동 혹은 부채수준의 변화 등을 통하지 않은 소득 이동에 대한 선행 실증분석은 많지 않다. Wilkie, Young, and Nutter(1996)는 부분적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법인의 규모별로 법인의 소득공제 항목 중 임대료, 이자지급액, 고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과 전체 분배 가능한 소득(Distributable income)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분배 가능한 소득이란 순이익에 임대료, 이자지급액 그리고 주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비율은 소규모 법인을 중심으로 TRA86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법인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만약 이러한 비율 증가가 고위 임직원에 대한 임금 변화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임금 증가를 통한 소득 이전이라는 가설에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TRA86이 부동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경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 증대를 통한 비율 증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경로는 실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역시 법인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이다. 다른 요인은 주요 근로자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이다. 임금-배당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근로자 숫자를 법인당 5명 이내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 변화를 통해 소득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Gorden and Slemrod(1998)은 자산 이동과 부채수준 변화로 인한 소득 이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산에 대한 수익률 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소득 이동으로 그 규모 역시 상당함을 보였다. 추정 결과 노동 보상방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상당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격차가 1%p 감소할 때 개인의 노동소득은 3.2% 증가하며 법인의 이익률은 0.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세법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형태와 귀속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1. 소득 이동 인센티브의 변화

우리나라 개인-법인 소득 간 소득 이동 인센티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세율 간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1년 62% 수준에서 급속하게 낮아져서 2000년대 후반 35%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 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소득세 세율인하 추세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1년 38%에서 1982년 30%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하락추세를 이어가 2009년 이후 22%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 이동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격차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수준에서 빠르게 낮아진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격차는 1982년 30%p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02~2004년 기간 동안 9%p까지 낮아졌다가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2012년 기준 16%p로 다시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격차 변화는 사업소득의 귀속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키게 된다. 즉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격차 축소로 인해 개인으로부터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거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만약 동 기간 동안 법인의 소득비중이 증가하였다면 조세부담의 격차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보이는 소득수준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이 소득수준은 개인 소득자가 법인으로의 소득 이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할 수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59

있다.²⁴⁾ 1982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보여주는 개인 소득수준은 연 1,340만원으로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 141만원의 9.5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소득수준 상승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급격하게 낮아졌다. 2012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직면하는 개인소득 수준이 연 6,316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연 소득 6,316만원은 그 해 1인당 국민소득 2,559만원의 2.5배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법인의 이익수준이 크지 않다면 최고세율의 50% 수준에서 설정된 법인세율의 낮은 세율이 소득 이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부담이 역전되는 기준소득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즉 소득 이동을 통한 조세부담 축소 유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표 IV-1>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단위: %, %p, 만원)

연도	소득세 최고세율 (θ_{max})	법인세		소득-법인 세율 격차	소득 수준 $\theta \geq \tau_{max}$	1인당 국민소득
		최고세율 (τ_{max})	최저세율			
1981	62	38	22	24	-	124
1982	60	30	20	30	1,340	141
1983	55	30	20	25	1,750	164
1984	55	30	20	25	1,750	185
1985	55	30	20	25	1,750	205
1986	55	30	20	25	1,750	238
1987	55	30	20	25	1,750	280
1988	55	30	20	25	1,750	332

24) 소득을 법인에 저축함으로써 개인소득에 비해 낮은 세부담을 지고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을 통해 소득 전환 시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거나 개인비용을 법인을 통해 지출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표 IV-1〉의 계속

(단위: %, %p, 만원)

연도	소득세 최고세율 (θ_{\max})	법인세		소득-법인 세율 격차	소득 수준 $\theta \geq \tau_{\max}$	1인당 국민소득
		최고세율 (τ_{\max})	최저세율			
1989	50	30	20	20	1,978	373
1990	50	34	20	16	2,578	446
1991	50	34	20	16	3,038	534
1992	50	34	20	16	3,038	602
1993	50	32	18	18	3,860	674
1994	45	30	18	15	3,892	782
1995	45	28	16	17	3,962	905
1996	40	28	16	12	4,960	1,007
1997	40	28	16	12	5,060	1,094
1998	40	28	16	12	5,060	1,064
1999	40	28	16	12	5,060	1,163
2000	40	28	16	12	5,360	1,277
2001	40	28	16	12	5,405	1,372
2002	36	27	15	9	5,537	1,514
2003	36	27	15	9	5,563	1,604
2004	36	27	15	9	5,589	1,726
2005	35	25	13	10	5,632	1,796
2006	35	25	13	10	5,632	1,882
2007	35	25	13	10	5,632	2,010
2008	35	25	11	10	6,263	2,113
2009	35	22	11	13	6,316	2,175
2010	35	22	10	13	6,316	2,378
2011	35	22	10	13	6,316	2,488
2012	38	22	10	16	6,316	2,559

주: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아지는 소득수준은 1인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도출
자료: 법제처, 「법령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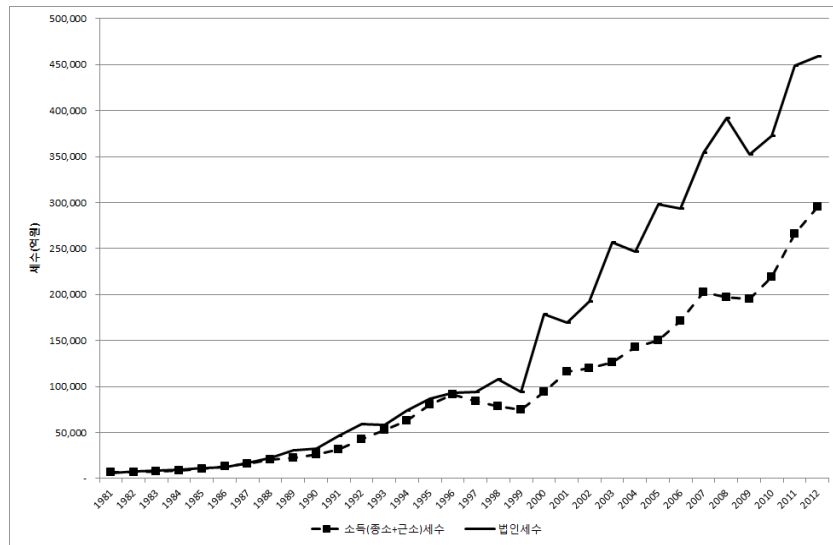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61

개인들의 사업체 형태 선택, 노동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상호 소득 이동이 가능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변화로 소득 이동의 개연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이동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간 격차 변화는 개인과 법인 간의 소득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세수추이는 이러한 소득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수와 개인소득세수(종합소득세와 감종근로소득세)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세수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수는 이전의 증가추세보다 더 빠르게 개인소득세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법인세수의 빠른 증가는 2000년대 이후 경기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법인세수의 빠른 증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소득-법인 간 세원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전병목(2008)은 2000년대 법인세수 증가를 기존의 유효세율 결정요인에서 확장하여 경제 내 법인의 비중, 법인의 수익성 변화까지 포괄하였으나 경제 내 법인의 비중 혹은 법인의 수익성 변화가 개인부문에서의 소득 이동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²⁵⁾ 또한 전병목(2006)은 2002년 개인소득세율 10% 인하 시점을 전후로 소득세 과세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행태 변화(Behavioral change)뿐만 아니라 각종 세부담 축소 노력(예: Fringe Benefits 확대 등 각종 조세회피 노력의 영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조세부과의 효율성비용 측면에서 진전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역시 개인소득세율 인하로 나타날 수 있는 법인 소득으로부터의 소득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의 이동성은 개별 세목에 대한 세수효과를 과대/과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효율성 문제, 재분배 관련 수치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25) 개인의 사업소득을 새로운 법인 혹은 기존 법인으로 이동시키면 경제 내 부가가치 중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법인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손실을 이동시키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IV-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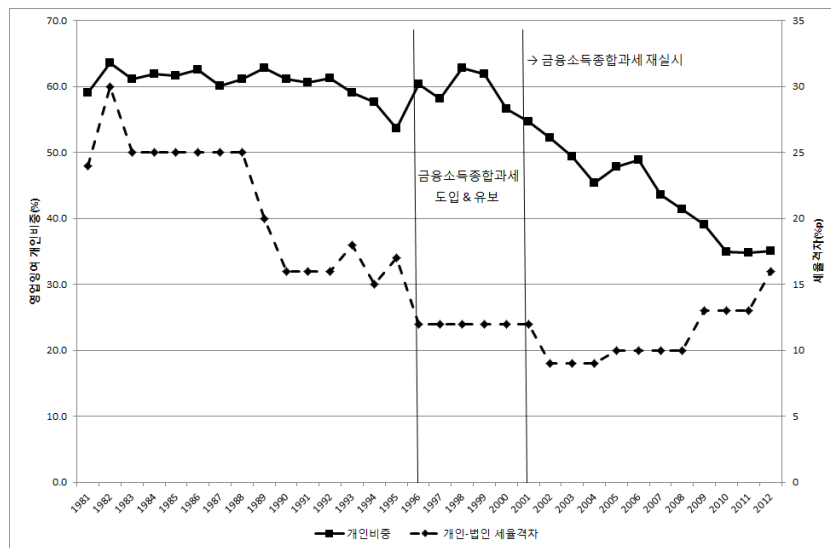


법인세수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는 두 세원 간 소득 이동을 야기할 수 있는 세율 격차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상 제공되는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와 개인(비영리단체 포함)에 대한 영업잉여를 이용하여 개인부문의 비중을 산출하였다.²⁶⁾ 전체 영업잉여 중 개인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60%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35% 수준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법인세수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혹은 개인소득세수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개인과 법인의 소득 배분을 변화시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θ_{\max})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τ_{\max})간의 격차($\theta_{\max} - \tau_{\max}$)는 1980년대 25%p 수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낮아졌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세율 격차의 변화 추세와 개인 영업잉여의 비중 변화를 쉽게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1980년대에는 상당한 세율 격차 축소에

26)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한국은행 자료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포함하였지만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영업잉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개인 영업잉여 비중은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다가 2000년대에는 세율 격차 증가와 함께 개인 영업잉여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V-2] 영업잉여 중 개인의 비중과 개인-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theta_{\max} - \tau_{\max}$)



주: 법인의 영업잉여는 비금융 법인기준이며 개인의 영업잉여는 개인 및 비영리단체를 포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국민소득계정』, 2013.

특이할 만한 사실은 1996년 금융거래 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동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누진적 개인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10~20% 세율수준으로 분리과세되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부부합산(2002년부터는 개인기준)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된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세부담을 줄여온 법인 대주주들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이다. 동시에 이 정책은 전반적인 소득 투명성을 크게 높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차명거래 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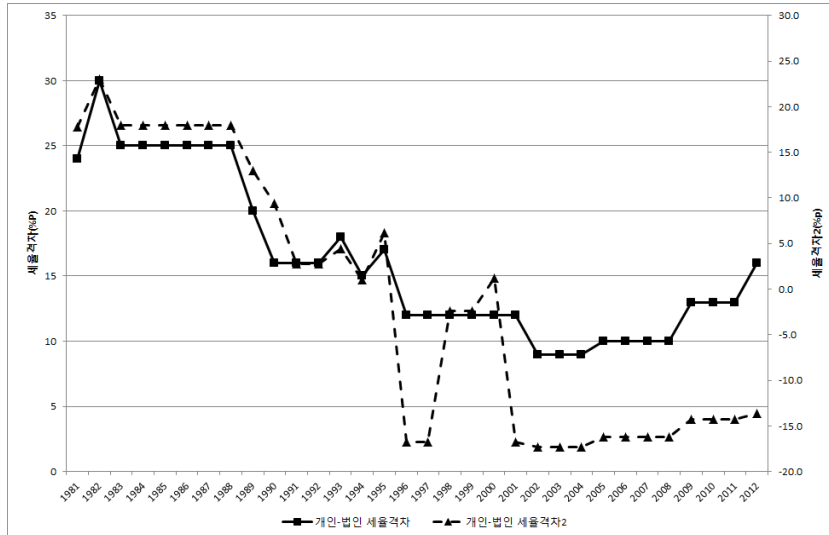
재산 형성과 증식, 그리고 이동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투명성이 낮던 개인자산 및 소득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더 이상 다수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증식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법인 형태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의 세부담도 높은 효과가 있다. 개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높인 것은 이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소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제적 변화는 세후소득의 측면에서 계량화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격차($\theta_{\max} - \tau_{\max}$)를 이용한 것은 소득을 법인에 저축함으로써 개인 세부담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율 효과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므로 개인에 대한 정상적인 소득배분을 가정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 이전 시기의 조정, 개인비용의 이전 등의 측면은 반영할 수 없다.

개인소득자로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부담은 개인소득세율 θ 이며(고소득자에게는 θ_{\max}), 법인을 통해 이득을 배분받을 경우 최종적인 세부담은 $(\tau_{\max} + (1 - \tau_{\max})\theta_{\max})$ 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 시기에는 분리과세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tau_{\max} + (1 - \tau_{\max})\eta$ 가 되며 η 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사업체와 법인으로 운영할 때 개인단계에서 부담하는 세율 격차는 $\theta_{\max} - (\tau_{\max} + (1 - \tau_{\max})\theta_{\max})$ 혹은 $\tau_{\max} + (1 - \tau_{\max})\eta$ 가 된다.

개인단계에서의 세율 격차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의 $(\theta_{\max} - \tau_{\max})$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율 격차의 하락 폭이 커졌으며 그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로 인한 영향(1998~2000년)을 제외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 IV-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한 소득 법인 간 세율 격차 비교



주: 세율 격차는 $(\theta_{\max} - \tau_{\max})$ 이며 세율 격차2는 $\theta_{\max} - (\tau_{\max} + (1 - \tau_{\max})\theta_{\max})$ 혹은 $\tau_{\max} + (1 - \tau_{\max})\eta$. 여기서 η 는 분리 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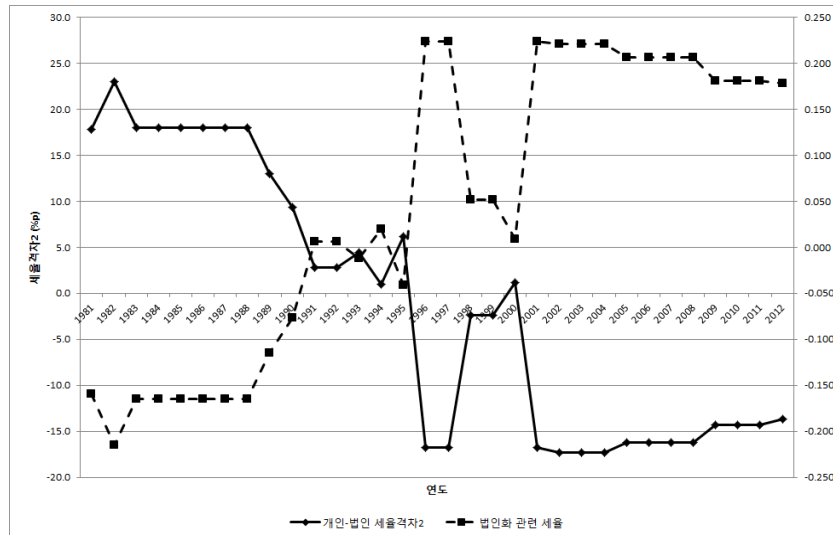
한편 소득 이동의 한 형태가 되는 사업체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화 추세는 다르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Goolsbee(1998)의 방법론에 따르면 법인화의 이득(G)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야 법인 형태가 소득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즉 $G > Y(t_c + (1 - t_c)t_e - t_p)$, 그 기준 변수값 $(t_c + (1 - t_c)t_e - t_p)$ 을 추정하였다.²⁷⁾ 분석기간 중 도입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반영하여 주주에 대한 소득세율 t_e 는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t_p 즉 θ_{\max})을 시점에 맞게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법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 변수(즉 $t_c + (1 - t_c)t_e - t_p$)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시기까지 점차 증가하여 오다가 2000년대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이전 시기

27) 여기서 t_c 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τ_{\max}), t_p 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θ_{\max}), t_e 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우리나라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는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여 $(t_c + (1 - \alpha t_c)t_e - t_p)$, $\alpha = 0.5$ 를 적용하였다.

까지는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법인화의 이득(G)이 양(+)의 값을 가지기만 하면 사업체 형태의 선택은 법인이 유리하게 구성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으로 세율 변수 값이 양(+)의 값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동안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법인화를 결정하는 변수는 그 값이 크게 증가한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법인화에 유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변수는 앞서 살펴본 사업체 유형간의 세율 격차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4] 개인-법인 간 소득세율 격차와 법인화 관련 세율 변화 추이



주: 법인화 관련 세율은 $(t_c + (1 - \alpha)t_e - t_p)$ 이며 $\alpha = 0.5$

2. 선행연구

소득 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보고서와 유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ordon and Slemrod(1998), Goolsbee(1998, 2004),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2012),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2010) 등이 있다.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67

Gordon and Slemrod(1998)는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세율 격차가 법인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산 이동 없는 소득 이동을 분석하였다. 1965년 이후 미국경제를 분석함으로써 상당한 소득 이동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기존의 자산구성 변화, 사업형태 변화에 더해 법인 경영자 등의 노동에 대한 보상 변화(임금 혹은 스톡 옵션)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였다.

Goolsbee(1998, 2004)는 개인 사업과 법인 형태 사업의 세율 격차가 비법인부문의 자본비율과 법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법인 부분의 자본비율(비법인자본/(비법인자본+법인자본))을 분석한 것(Goolsbee(1998))은 조세부담이 사업체 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인활동에 대한 분석(Goolsbee(2004))은 법인부문의 고용, 매출 비중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법인부문의 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2010)은 핀란드를 대상으로 Dual Income Taxation(DIT)이 야기한 세율 격차가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소유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소득세 대상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법인형태(즉, 자본소득으로 전환)로 소유구조를 유의미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2012)는 스웨덴의 DIT가 야기하는 자본세율 우대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유형 변화, 조세회피 목적의 지주회사 등의 설립 변화를 분석하였다. Differences-in-differences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스웨덴에서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세부담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구조가 집중된 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s, 4인 이하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배당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losely held corporations의 경영자 대주주의 지분이 더 증가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의 지주회사와 금융거래만 하는 shell companies의 설립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실증분석의 방법

개인-법인 간 소득 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혹은 개별 사업체)에 대한 세무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서베이 자료도 비교적 조사가 용이한 개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법인 간 소득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은 소규모 사업체라 할 수 있는데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다. 가능한 범위에서 미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과 함께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시도하였다.

실증분석모형은 Gordon and Slemrod(1998), Goolsbee(1998, 2004)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법인활동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자산이익률, 영업잉여 비중, 자산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상대적 조세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격차²⁸⁾를 이용하였다. 세율 격차 이외에도 개인사업체와 법인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담 관련 요인²⁹⁾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상대적 중요성, 측정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세율 격차가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_i + \beta_i tax_{i,t} + \gamma_i oth_{i,t} + \epsilon_{i,t}$$

여기서 $y_{i,t}$ 는 분석대상인 종속변수로 법인부문의 영업잉여 비중³⁰⁾, 과

28) 세율 격차 변수로 Gordon and Slemrod(1998)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의 격차($\theta_{\max} - \tau_{\max}$)와 Goolsbee(1998, 2004)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에 주주배당 세율까지 고려한 세율 격차($t_c + (1-t_c)t_e - t_p$)를 함께 사용하였다($t_c = \tau_{\max}, t_p = \theta_{\max}$).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배당성향이 낮고 법인을 통한 비용공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theta_{\max} - \tau_{\max}$)가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9) 간이과세, 복식부기 의무,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무조사 등

30)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면 자본의 수익률은 동일하므로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은 법인의 자본 비중과 유사하여 Goolsbee(1998)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세소득 비중, 법인 수 비중, 자산이익률, 조정 자산수준 등이 이용되었다. $tax_{i,t}$ 는 조세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 배당소득 최고세율)이다. $oth_{i,t}$ 는 조세격차 이외의 변수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경제상황, 추세 등)이다.

가. 거시자료 분석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가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이동의 정확한 통로를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소득 이동의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에 주 목적을 두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소득 이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소득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이들과 개인-법인 소득격차, 법인화 결정 세율변수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득 이동과 관련된 결과변수로서는 개인과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 개인과 법인의 과세소득 비중, 전체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의 비중, 법인의 자산이익률 등을 이용하였다.

개인과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과 과세소득 비중의 변화는 소득 이동의 구체적 방법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부채수준 변화, 법인화 여부 결정, 근로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 이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전체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의 비중은 사업체의 세무상 법인화³¹⁾ 여부 결정에 대한 조세요인의 유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사업체의 출범 시 법인화 결정 혹은 기존 사업체의 유형 변화 등을

Goolsbee(2004)와 같이 단순히 법인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한 변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31) 조합법인 등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법인세 부담을 담당하지 않고 각 파트너의 개인소득으로 배분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상 법인 구분과 세무상 구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을 법인사업자로 간주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법인사업자 비중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의 자산수익률 변화는 소득격차 등 조세정책의 변화로 세부담 회피 목적의 소득 이동이 발생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법인 자산수익률 변화³²⁾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모형은 OLS를 이용하였다. 대부분 비율변수로 0~1 사이의 안정된 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 비중 변화 분석에 이용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ROS_{p,t} = \beta_0 + \beta_1 Trend + \beta_2 TD_t + \epsilon_t$$

여기서 $ROS_{p,t}$ 는 t 연도 개인의 영업잉여 비중(%) (=개인영업잉여/(개인영업잉여+법인영업잉여))이다. Trend 변수는 선형추세 변수($t = 1, 2, \dots, n$)이며 TD_t 는 각 연도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의 격차($\theta_{\max} - \tau_{\max}$)이다. 선형 추세변수는 조세제도 이외의 요인에 의해 분석기간 동안 나타나는 영업잉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 격차가 증가하게 되면 법인으로의 소득 이동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동 변수에 대한 양(+)의 추정계수를 기대하게 된다. 구체적인 분석기간은 1981~2012년이며 개인 및 법인의 영업잉여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영업잉여 비중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최고세율 격차가 증가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소득으로부터 법인소득으로의 소득 이동이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추세변수 역시 개인 영업잉여의 비중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개인사업 부문에 대한 세무행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세정당국은 세원 투명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32) 즉, 조세회피 목적으로 개인소득부분에서 법인부분으로 소득 이동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법인자산에 대한 수익률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71

형태가 갖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성 혹은 유한책임의 가치가 사회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최고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전체 영업잉여 중 개인의 비중은 0.94%p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단순화된 모형이지만 상당한 세원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에 소득을 남겨두고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배분 시까지의 모든 세부담을 감안한 세율 격차, 즉 $\theta_{\max} - (\tau_{\max} + (1 - \alpha\tau_{\max})\theta_{\max})$ 혹은 $\tau_{\max} + (1 - \alpha\tau_{\max})\eta$ 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α 는 이중과세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세율 수준의 배당세액 공제가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0.5를 적용하였다. 소득의 최종배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하더라도 개인사업소득과 법인을 통한 소득에 존재하는 소득 격차는 개인 영업잉여 비중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원 이동의 정도는 최종단계의 세부담을 고려함으로써 상당히 줄어들었다. 세율 격차 1%p 증가에 따라 개인의 영업잉여 비중은 0.2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 개인 영업잉여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OS		ROS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상수	92.0756***	< 0.001	73.7087***	< 0.001
TD1	-0.9377***	< 0.001	-	-
TD2	-	-	-0.2535**	0.0269
Trend	-1.3785***	< 0.001	-1.2499***	< 0.001
Adj-R square	0.8673		0.7834	
No. of Samples	32		32	

주: 1. TD1은 $\theta_{\max} - \tau_{\max}$, TD2는 $\theta_{\max} - (\tau_{\max} + (1 - \alpha\tau_{\max})\theta_{\max})$ or $\tau_{\max} + (1 - \alpha\tau_{\max})\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석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합계에서 법인소득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동 자료가 조세부담 축소 목적의 소득 이동 분석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법인 전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 및 부동산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며 법인의 소득은 당기순이익³³⁾을 이용하였다. 또한 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산업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RI_{c,i,t} = \beta_1 TD_{i,t} + \beta_2 D_1 + \dots + \beta_{15} D_{14} + \epsilon_{i,t}$$

$RI_{c,i,t}$ 는 t연도에서 i산업에 속한 개인과 법인의 소득 중 법인의 비중(%) (= 법인 당기순이익 / (개인 사업 및 부동산 소득 + 법인 당기순이익))이며 D_i 는 i산업 더미변수이다. 산업 종류는 14개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이다. 산업별 구분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개인 사업체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상 개인소득자의 업종별 소득이 제공되는 기간인 2006~2010년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중 법인의 비중은 (개인-법인) 소득세율 격차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추정계수는 20.12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2006~2010년) 동안 세율 격차의 변화(3%p)는 작았지만 법인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당기순이익은 적자법인과 흑자법인 당기순이익을 합친 개념이다.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73

개인단계의 세부담을 반영한 세율 격차 변수(TD2)를 이용할 경우 큰 변화는 없고 세율 격차의 영향력 계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개인사업소득과 법인배당소득의 세부담 격차가 커질수록 법인의 소득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업종 간 구분 더미변수의 유의성도 높아졌다.

〈표 IV-3〉 법인소득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I		RI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1	20.12*	0.0843	-	-
TD2	-	-	25.16*	0.0843
D(농·림·어업)	-163.95	0.2560	555.49*	0.0589
D(광업)	-130.71	0.3642	588.73**	0.0458
D(제조업)	-131.95	0.3597	587.49**	0.0462
D(전기·가스·수도업)	-125.39	0.3839	594.05**	0.0439
D(건설업)	-42.11	0.7693	677.33**	0.0223
D(도·소매업)	-173.09	0.2308	546.35*	0.0631
D(음식·숙박업)	-158.45	0.2721	560.99*	0.0566
D(운수·창고·통신업)	-231.15	0.1113	488.29*	0.0957
D(금융 및 보험업)	76.55	0.5942	795.99***	0.0078
D(부동산업)	-139.15	0.3343	580.29**	0.0488
D(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29.55	0.1138	489.89*	0.0946
D(교육서비스업)	-132.89	0.3563	586.55**	0.0465
D(보건업)	-230.01	0.1131	489.43*	0.0949
D(기타서비스업)	-224.19	0.1223	495.25*	0.0912
Adj-R square	0.3229		0.3229	
No. of Samples	70		70	

주: 1. TD1은 $\theta_{\max} - \tau_{\max}$, TD2는 $\theta_{\max} - (\tau_{\max} + (1 - \alpha\tau_{\max})\theta_{\max})$ or $\tau_{\max} + (1 - \alpha\tau_{\max})\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업종 간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인의 역할 차이뿐만 아니라 업종별 한계세율의 격차를 반영하였다. 즉,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한계세율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 격차 변수(TD3, 세율 격차 3)를 도출하였다.

$$TD3 = \theta_{\max} - \tau_i, i = 1, \dots, 12$$

새로운 세율 격차 변수 TD3를 이용할 경우, 각 산업별 세율 격차는 산업의 평균 수익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까지 감안한 개인소득자 관점의 세율 격차 4(TD4)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D4 = \theta_{\max} - (\tau_i + (1 - \alpha\tau_i)\theta_{\max} \text{ or } \tau_i + (1 - \alpha\tau_i)\eta)$$

여기서 $\alpha = 0.5$ 이다.

수정된 모형의 추정 결과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높아졌다. 이제 세율 격차의 영향은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개인과 법인의 세율 격차 확대가 법인소득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법인소득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I		RI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3	8.13714**	0.0169	-	-
TD4	-	-	8.7187**	0.0381
D(농·림·어업)	-128.969	0.1967	127.5278*	0.0721
D(광업)	-58.2983	0.5071	201.0482**	0.0147
D(제조업)	2.30401	0.9745	264.6753**	0.0119
D(전기·가스·수도업)	-31.8217	0.6974	235.3143**	0.0107
D(건설업)	-23.4034	0.8227	238.0335***	0.0008

〈표 IV-4〉의 계속

	RI		RI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D(도·소매업)	-138.109	0.1672	118.3878*	0.0943
D(음식·숙박업)	-64.8817	0.4290	195.628**	0.0282
D(운수·창고·통신업)	-214.071**	0.0452	47.77283	0.4795
D(금융 및 보험업)	113.1583	0.2540	376.5721***	<.0001
D(부동산업)	-4.89599	0.9458	257.4753**	0.0143
D(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30.373**	0.0416	36.8179	0.5741
D(교육서비스업)	-97.9091	0.3254	158.5878**	0.0265
D(보건업)	-289.42**	0.0311	-4.62	0.9411
D(기타서비스업)	-210.366*	0.0512	52.46597	0.4350
Adj-R square	0.3560		0.3391	
No. of Samples	70		70	

주: 1. TD1은 $\theta_{\max} - \tau_i$, TD2는 $\theta_{\max} - (\tau_i + (1 - \alpha\tau_i)\theta_{\max})$ or $\tau_i + (1 - \alpha\tau_i)\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이 사업체의 법인화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사업체 중 법인 사업체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수에 관계없이 개인소득자 단위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사업 및 부동산 소득) 신고자 수를 이용하였으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규모를 이용하였다.³⁴⁾ 분석기간은 2006~2010년이며 앞서 분석과 같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4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RN_{c,i,t} = \beta_1 TD_{i,t} + \beta_2 D_1 + \dots + \beta_{15} D_{14} + \epsilon_{i,t}$$

34) 상법상 법인이나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니지 않는 조합법인의 경우 제외되게 된다.

$RN_{c,i,t}$ 는 i 산업에 속한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의 비중(%) (=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종합소득 신고자 수 + 법인세 신고법인 수))이며 D_i 는 i 산업 더미변수이다. 추정 결과 법인 사업체 수 비중은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다. 즉, 사업체 유형의 결정은 사업체 설립 당시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만 한번 결정 되고 나면 바꾸는 데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총사업체에서 법인의 비중 변화가 아니라, 당해 신규 사업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현재로서 획득하기 어렵다.

개인 단계의 세부담을 반영한 세율 격차 변수(TD2)를 이용할 경우에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신규 사업체만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율 변수 추정치의 방향성은 이론에 부합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각 업종별 수익성에 기초한 세분화된 한계세율을 적용할 때(TD3, TD4)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율 격차의 확대는 법인 수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다.

〈표 IV-5〉 법인사업체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N		RN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1	0.1568	0.4282	-	-
TD2	-	-	0.1959	0.4282
D(농·림·어업)	17.68***	<0.0001	23.29***	<.0001
D(광업)	67.86***	<0.0001	73.47***	<.0001
D(제조업)	24.20***	<0.0001	29.81***	<.0001
D(전기·가스·수도업)	62.84***	<0.0001	68.45***	<.0001
D(건설업)	25.76***	<0.0001	31.37***	<.0001
D(도·소매업)	8.90***	0.0006	14.51***	0.0048
D(음식·숙박업)	1.70	0.4896	7.31	0.1448

〈표 IV-5〉의 계속

	RN		RN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D(운수·창고·통신업)	0.38	0.8759	5.99	0.2307
D(금융 및 보험업)	45.50***	<0.0001	51.11***	<.0001
D(부동산업)	0.16	0.9467	5.78	0.2481
D(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24***	0.0001	15.85***	0.0022
D(교육서비스업)	51.34***	<0.0001	56.95***	<.0001
D(보건업)	0.00	0.9986	5.61	0.2613
D(기타서비스업)	-0.80	0.7467	4.81	0.3348
Adj-R square	0.9950		0.9950	
No. of Samples	70		70	

주: 1. TD1은 $\theta_{\max} - \tau_{\max}$, TD2는 $\theta_{\max} - (\tau_{\max} + (1 - \alpha\tau_{\max})\theta_{\max})$ or $\tau_{\max} + (1 - \alpha\tau_{\max})\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IV-6〉 법인사업체 비중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N		RN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3	0.08248	0.1559	-	-
TD4	-	-	0.09686	0.1747
D(농·림·어업)	17.51***	<.0001	20.17***	<.0001
D(광업)	68.07***	<.0001	70.80***	<.0001
D(제조업)	25.04***	<.0001	27.86***	<.0001
D(전기·가스·수도업)	63.26***	<.0001	66.10***	<.0001
D(건설업)	25.42***	<.0001	28.13***	<.0001
D(도·소매업)	8.73***	<.0001	11.39***	<.0001
D(음식·숙박업)	2.12	0.1389	4.89***	0.0018

〈표 IV-6〉의 계속

	RN		RN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D(운수·창고·통신업)	0.03	0.9875	2.73**	0.0212
D(금융 및 보험업)	45.35***	<.0001	48.09***	<.0001
D(부동산업)	0.996	0.427	3.82**	0.033
D(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71***	<.0001	12.46***	<.0001
D(교육서비스업)	51.17***	<.0001	53.83***	<.0001
D(보건업)	-1.13	0.6219	1.76	0.1051
D(기타서비스업)	-1.18	0.5208	1.53	0.1873
Adj-R square	0.9951		0.9951	
No. of Samples	70		70	

주: 1. TD1은 $\theta_{\max} - \tau_i$, TD2는 $\theta_{\max} - (\tau_i + (1 - \alpha\tau_i)\theta_{\max})$ or $\tau_i + (1 - \alpha\tau_i)\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의 이동성을 분석하는 다른 방법은 법인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법인의 자산이익률이 세율 격차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의 이동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자산이익률이 경기변동 등 정상적인 사업환경에 따른 변화 이외에 세율 격차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하게 된다면 소득 이동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이익률 분석을 위해서는 법인의 자산규모와 이익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 이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국세청 법인세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동 자료는 개별 법인에 대한 자산과 이익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일정 자산규모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³⁵⁾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2006~2010년 기간의 법인의 자

35) 개별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패널로 구성하여 분석할 수도 있는데 다음의 '미시자료 분석'부분에서 다룬다.

산규모별 이익규모를 이용하여 평균적 자산이익률을 도출하고 다음 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ROA_{c,i,t} = \beta_1 TD_{i,t} + \beta_2 D_1 + \dots + \beta_6 D_5 + \epsilon_{i,t}$$

$ROA_{c,i,t}$ 는 t연도 i자산규모 그룹 법인의 자산이익률이며 더미변수 ($D_i, i = 1, \dots, 5$)는 자산규모 그룹을 나타낸다. 자산규모 그룹의 구성은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의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체 형태의 변화를 통해 소득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법인들은 개인사업체와 유사한 규모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법인들을 포함하여 자산규모 범위를 선택하였다.³⁶⁾

추정 결과 세율 격차가 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계수의 방향성도 이론³⁷⁾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세율 격차가 증가할수록 법인의 자산이익률이 낮아지는, 즉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득 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인 추정식의 구성도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 격차 변수를 개인단계 부담수준으로 변경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산이익률과의 관계성이 낮은 것은 자료가 존재하는 2006~2010년 기간 동안 소폭의 법인세 세율 인하가 있었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이 매우 커 세율 변화의 영향력을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자산이익률은 수정된 세율 격차 변수(TD3, TD4)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 격차가 커지면 법인들의 자산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이론

36)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략적으로 자산규모 100억원 이하 그룹만 분석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룹별 이질성(Heterogeneity)을 회귀모형에 반영하므로 구분기준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37) 조세부담 축소를 위한 소득만의 이동을 가정하므로 세부담이 낮은 부문의 자산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적인 경제주체들의 효용 극대화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각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거시변수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 격차를 이용하여 소득 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득자는 개인소득과 법인을 통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납세자로서 동시에 법인의 소득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주주이어야 한다. 현재의 거시자료는 이러한 소득 이동 가능 법인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시자료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IV-7〉 자산이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OA		ROA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1	-0.7152	0.2989	-	-
TD2	-	-	-0.8940	0.2989
D(5억 이하)	6.358	0.4261	-19.210	0.2612
D(10억 이하)	10.021	0.2153	-15.546	0.3604
D(20억 이하)	10.815	0.1825	-14.752	0.3849
D(50억 이하)	10.463	0.1965	-15.104	0.3739
D(100억 이하)	10.128	0.2106	-15.439	0.3636
Adj-R square	0.0132		0.0132	
No. of Samples	25		25	

주: 1. TD1은 $\theta_{\max} - \tau_{\max}$, TD2는 $\theta_{\max} - (\tau_{\max} + (1 - \alpha\tau_{\max})\theta_{\max})$ or $\tau_{\max} + (1 - \alpha\tau_{\max})\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IV-8〉 자산이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

	ROA		ROA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3	-0.789***	0.0073	-	-
TD4	-	-	-0.760**	0.0378
D(5억 이하)	24.230**	0.0127	-2.746	0.2015
D(10억 이하)	20.476***	0.0048	-3.747	0.2666
D(20억 이하)	21.270***	0.0037	-2.953	0.3783
D(50억 이하)	20.918***	0.0041	-3.304	0.3254
D(100억 이하)	13.166***	0.0048	-10.765*	0.0942
Adj-R square	0.2910		0.1714	
No. of Samples	25		25	

주: 1. TD1은 $\theta_{\max} - \tau_i$, TD2는 $\theta_{\max} - (\tau_i + (1 - \alpha\tau_i)\theta_{\max})$ or $\tau_i + (1 - \alpha\tau_i)\eta$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나. 미시자료 분석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패널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Workplace Panel Survey)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노동, 복지, 재정 등 다양한 연구수요가 있는 개인 및 가구에 비해 기업부문에 대한 연구수요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사업체패널은 총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³⁸⁾ 현재 시점

38) 사업체패널조사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 사업장과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층화추출 방법을 거쳐 민간 부문 약 1,600개, 공공부문 약 300개의 사업장이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은 조사 직전연도의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내용에 따라 인사담당자, 고용 및 재무담당자, 근로자대표가 각각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고용 및 재무현황은 우편 및 팩스 조사나 웹조사 방식으로 담당자가 조사원 방문 이전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

에서 이용 가능한 200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체패널이 제공하는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패널자료 중 사업체의 재무상황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사업체단위의 소득 이동 여부를 분석한다.

사업체패널의 조사기간(2005~2009년) 동안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변화는 없었지만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25→22%)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 사업체가 직면하는 순이익의 변화로 인한 한계세율 변화도 추정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가 모형 추정의 근거가 된다.

〈표 IV-9〉 분석기간 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단위: %)

	2005	2007	2009
법인세율			
- 낮은 세율	13	13	11
- 높은 세율	25	25	22
개인소득세율			
- 최고 세율	35	35	35

소득 이동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시계열분석에서 이용하였던 자산이익률(ROA) 분석이며 두 번째 방법은 자산 이동과 함께 나타나는 소득 이동 분석이다. 첫 번째 방법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법인 간 소득만 이동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자체를 이동시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경우를 분석한다. 이는 개인-

자현황, 손익계산서상 정보(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대차대조표상 정보(자산총액, 부채총액) 등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재무현황의 경우 응답에 대한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른 항목보다 항목 응답률이 낮은 편인데, 2006년에 조사된 2005년 사업장의 재무현황 응답률은 59%이며, 2007년은 77%, 2009년은 71%이다. 이에 따라 3개년도 모두 재무현황을 응답한 사업장은 3개년도 모두 응답 사업장 중 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법인간의 소득 이동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두 가지 소득 이동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표 IV-10〉 사업체 패널자료 기초 통계량

(단위: 개사, %)

자산규모	2005년		2007년		2009년	
	소유주 경영	기타 경영	소유주 경영	기타 경영	소유주 경영	기타 경영
50억원 이하	16	7	16	7	19	4
구성비	69.6	30.4	69.6	30.4	82.6	17.4
50억~100억원	36	12	36	12	37	11
구성비	75.0	25.0	75.0	25.0	77.1	22.9
전 체	225	269	235	259	270	224
구성비	45.5	54.5	47.6	52.4	57.7	45.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자료』, 각 연도.

자산수익률(ROA) 분석은 개인과 법인 간의 소득 이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인의 자산수익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업용 자산의 본질적 변화없이 개인-법인 간의 세율 격차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이동이 발생하면 법인의 자산수익률이 정상적인 상황과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 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의 한계세율간의 차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형태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특히 개인소유주의 경우 배당조정을 통한 소득 이동이 쉽게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도 포함하였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ROA_{i,t} = \beta_1 TD_{i,t} + \beta_2 MG_i + \beta_3 (TD_{i,t} \times MG_i) + \beta_{4,5,6} YDUM_{t,t=2005,2007,2009} + \epsilon_{i,t}$$

$ROA_{i,t}$ 는 각 사업체의 연도별 자산수익률을 나타내며, $TD_{i,t}$ 는 각 사업체가 직면하는 연도별 세율 격차, MG_i 는 각 사업체의 경영형태 더미변

수(소유주 경영 = 1, 기타 = 1)이다. $TDUM_t$ 는 경기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이다. 세율 격차($TD_{i,t}$)와 경영형태(MG_i)의 곱으로 표현된 변수($TD_{i,t} \times MG_i$)는 개인소유주 경영일 때 소득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포착하기 위한 변수이다.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격차는 소득 이동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법인의 소유 및 운영구조가 소득 이동 및 분배조정에 적합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 만약 법인의 소유구조가 잘 분산되어 있다면 1명 대주주의 세부담 축소를 위한 소득 이동과 다른 주주들에 중립적인 배당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세부담 축소를 위한 임금, 배당 등 다양한 형태로의 소득 전환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적절한 세율 격차와 함께 법인의 소유주가 기업경영을 책임질 때 소득 이동 및 분배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의 곱으로 정의된 새로운 변수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분석은 전체 사업체와 함께 소유주 경영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체에서 전환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체를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추정 결과 법인의 자산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세율 격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담이 낮은 곳으로 소득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고 법인의 소유구조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문제일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 축적 이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소유주가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 경우 소득 격차가 자산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TD \times Mg$)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도 소규모 법인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소규모 법인에서 소득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이 50억~100억원 규모인 법인의 경우 유의수준 5.6%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소득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85

〈표 IV-11〉 자산수익률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전체 사업체		자산 50억원 이하		자산 50억~100억원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	-0.0087***	0.001	-0.0979**	0.015	-0.0199***	0.000
Mg	-0.0580	0.331	-1.2044	0.187	-0.0746	0.466
(TD×Mg)	0.0012	0.738	0.0516	0.273	0.0117*	0.056
D2005	0.1991***	0.000	2.4305***	0.003	0.2841***	0.002
D2007	0.1171***	0.010	0.9543	0.227	0.2245**	0.020
D2009	0.2263***	0.000	2.0901**	0.012	0.2973***	0.003
Prob.>Chi2	0.0000		0.0061		0.0000	
No. of Obs.	1,542		96		15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임금수준의 변화〉

- 소득 이동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 소규모 법인의 소유주로 경영자인 개인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에 대해 급여 혹은 배당의 형태로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
 - 그러므로 소유주인 개인의 급여수준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득 이동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음

- 임금수준 분석을 위해서는 소유주 혹은 대주주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차선책으로 소규모 법인의 평균 임금수준 변화를 이용하여 소득 이동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함
 -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임금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I) 증가율로 할인한 조정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분석
 - 1인당 GNI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명목금액 증가율을 반영

□ 분석모형

$$RWage_{i,t} = \beta_1 TD_{i,t} + \beta_2 SE_{i,t} + \beta_3 MG_i + \beta_4 (TD_{i,t} \times MG_i) + \beta_{5,6,7} YDUM_{i,t=2005,2007,2009} + \epsilon_{i,t}$$

○ $SE_{i,t}$ 는 i기업의 t시점에서 임원비용

□ 분석 결과 소유주 경영 소규모 법인(자산 10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의 변화를 보여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음

- 소유주 경영 소규모 법인에서 세율 격차에 따른 임금 변화의 가능성 제시
- 한편 평균임금 수준에 임원비중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

〈표 IV-12〉 임금수준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전체사업체		자산 50억원 이하		자산 50억~100억원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	-0.00007**	0.019	0.00003	0.882	0.00018	0.224
Se	0.00008**	0.022	0.00068***	0.000	0.00007	0.361
Mg	-0.00284***	0.000	0.00217	0.593	0.00225	0.409
(TD×Mg)	0.00003	0.463	-0.00018	0.373	-0.0002	0.156
D2005	0.01080***	0.000	0.00455	0.239	0.00517**	0.042
D2007	0.01115***	0.000	0.00720**	0.048	0.00541**	0.040
D2009	0.00995***	0.000	0.00512	0.193	0.00395	0.140
Prob.>Chi2	0.0000		0.0000		0.0000	
No. of Obs.	1,500		69		144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자산수익률의 변화는 자산 이동 없는 소득만의 이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세부담 축소를 위해 나타날 수 있는 자산자체의 이동 여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자산 이동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산 이동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과세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자산 변동도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법인의 자산 변화 중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산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자산 수준을 명목 GDP 증가율로 할인하였다. 즉 각 연도별 기업자산 수준은 GDP 증가율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자산수준 변화는 경기변동, 세율 격차, 소유주 경영 여부 등에 따라 설명되게 된다.

$$AAsset_{i,t} = \beta_1 TD_{i,t} + \beta_2 MG_i + \beta_3 (TD_{i,t} \times MG_i) + \beta_{4,5,6} YDUM_{i,t=2005,2007,2009} + \epsilon_{i,t}$$

여기서 $AAsset_{i,t}$ 는 각 연도 법인별 명목자산을 2005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로 할인한 자산수준이다.

분석 결과는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 격차가 증가할 수록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 부문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산 5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자산 50억~100억원의 법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전체 사업체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법인의 자산규모보다 소유주 직접경영의 형태가 보다 조세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 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소유주 경영 형태의 법인 (조정)자산 규모(2009년 기준) 3,563억원³⁹⁾의 2.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유주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법인 수 비중이 약 50%(2005년 45.5%, 2007년 48.2%, 2009년 54.9%)인 점과 소유주 경영 법인의 평균자산 규모가 그 외 법인의 2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법인 자산수준에 대한 영향력

39) 분석샘플을 2005년 경영형태 기준으로 2009년 (조정)자산규모를 계산하면 전체 샘플 평균은 1.0조원, 소유자 경영 법인은 3,563억원, 기타형태 법인은 1.55조원임

은 대비 0.66%p⁴⁰⁾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 추정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35→38%)의 영향을 살펴보면 동 조치는 소득-법인세 세율 격차를 3%p 확대시키므로 법인부문의 자산을 기준연도 대비 1.99%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증가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법인 자산 증가분 × 소유주-경영 법인 자산이익률(2009년 0.05%))만큼⁴¹⁾ 소득세율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한 전체 세수는 소득 이동이 없을 경우보다 소득 이동분에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격차를 곱한 만큼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별 세목별 세수는 더 크게 변화하게 된다. 소득세 세수는 소득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세수 증가분보다 (이동 소득세율 × 한계세율(38%)) 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면 법인세수는 (이동 소득세율 × 한계세율(23%)) 늘어나게 되어 전체 세수는 소득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세수 증가분보다 (이동 소득세율 × 세율 격차(15%)) 만큼 감소하게 된다. 경영 형태의 영향은 기업주 경영(즉 $Mg = 1$)일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 증가 폭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확대에 대해 기업주의 태도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소극적임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법인들의 자산수준은 세율 격차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강화 추세가 세율 격차 확대에 따른 영향을 압도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들은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세부담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만의 이동보다는 자산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산을 개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이동의 전형적인 형태는 거시자료 분석에서 보았듯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산 이동 없는 소득 이동보다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산 이동 없는 소득 이동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자가 법인사업체를 이미 설립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40) $23\% \times 2.89\%p = 0.66\%p$

41) 여기에서는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자산이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IV-13〉 자산수준에 대한 세율 격차의 영향(REML)

	전체사업체		자산 50억원 이하		자산 50억원~100억원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	-10206.8***	0.003	-1639.482**	0.033	-65.44317	0.394
Mg	-364429***	0.000	-43274.86**	0.013	523.9966	0.712
(TD×Mg)	10301**	0.027	1589.755*	0.077	28.23097	0.739
D2005	381409.5***	0.000	48978.66***	0.002	1702.438	0.185
D2007	386381.2***	0.000	47404.51***	0.002	1753.603	0.189
D2009	417880.8***	0.000	50270.89***	0.002	1805.89	0.187
Prob.>Chi2	0.0000		0.0178		0.0000	
No. of Obs.	1,542		96		15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개인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즉 전체 샘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들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하 샘플에서는 그 유의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보다는 법인의 소유자이자 경영인이 그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 자산규모를 상대적으로 빨리 늘려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높아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를 활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개인소득을 보관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소비수준에 비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직접 소비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소득을 굳이 세부담이 높은 개인소득의 형태로 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 이익을 소유하더라도 개인과 법인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소비지출은 Fringe benefits의 형태로 법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의 경우 개인자산

혹은 소득의 법인귀속은 자신의 세후소득을 보다 빠르게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자산과 이득의 법인귀속은 개인소득의 형태를 이자 및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의 형태로 전환하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으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소득의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개인자산의 법인 이동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예상보다 낮은 정책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통해 세부담 변화정책의 효과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제어할 수 없다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줄이는 방법이다.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수확보의 방안으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안과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모두 제시되었다. 세목 차원에서는 세원규모가 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 논의는 각 세목별로 분리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세부담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세목 간 세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관점에서 부담구조와 세수 등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법인소득세 역시 개별 세목의 관점에서 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검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접근 노력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소득획득 사업체의 성격 규명에 따른 구분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활동에 대한 과세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획득의 당사자인 개인 혹은 법인이 완전히 구분된 개체가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상황, 특히 조세부담 수준에 따라 상호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신에 대한 소득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 소유주이면서 경영자인 개인은 두 세목의 세부담에 따라 임금-배당-자본이득(미실현 이익 포함) 등의 형태로 자신의 소득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고 피상적인 세목 구분에 얽매인 세제 분석은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소득세원과 법인소득세원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치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효율성 저하, 소득재분배와 관련 통계의 왜곡, 세수효과의 과대추정 등이다. 소득세원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즉, 효율성 저하)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득 이동

으로 소득분배 관련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혹은 적용구간 확대에 의한 세부담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법인 전환⁴²⁾을 통해 일정 부분 회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해지게 된다. 실질적 소득수준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이동으로 인해 통계상 소득 격차 혹은 재분배 효과는 왜곡될 수 있다. 만약 개인소득에서 법인소득으로 소득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간 소득 격차는 실제수준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 등의 측정⁴³⁾과 그 변화 추세는 실제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의 변화를 시장소득의 변화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원의 이동은 소득을 이동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소득자 간의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도 해치게 된다. 최고세율 인상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동일 소득임에도 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원의 이동은 각 세목 정책변화의 세수효과 측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혹은 적용구간의 하향조정)의 세수효과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세원의 이동으로 인해 실제 추정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볼 때 소득세원의 이동성에 대한 분석은 향후 개인 및 법인 소득세정책에 있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42) 법인 전환과 함께 법인차량, 사내 복지 등의 Fringe benefits의 형태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소득을 여러 가족들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전환하여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소득시기를 유리하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43)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패널이라기보다 횡단면자료에 가깝다. 그러므로 소득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왜곡된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는 전병목(2006)을 제외하고 발견하기 어렵다. 전병목(2006)은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 변화에 따른 개인의 행태변화 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회피 노력의 결과까지 포함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정치에는 개인부문으로부터 법인부문의 세원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보다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위소득 5%의 과세소득탄력성은 0.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의 상위소득 1% 과세소득탄력성 0.62(Saez, 2004)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의 세원 이동 가능성은 선행연구의 추정치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상의 소득수준에 대해 보상형태별 세부담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가 소득 보상형태에 따라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인 소득자에 대해 노동에 대한 보상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 배당 각각 50% 보상형태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세제는 대체적으로 임금소득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사회보장 관련 세부담으로 인해 최종적인 세부담 수준은 변화 가능함을 보여준다.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100% 순수 배당을 제외한 3가지 보상형태의 경우,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형태에 따른 일방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담 변화가 심했다. 이는 낮은 소득수준에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건강보험료의 종합소득기준 부과 등의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득이 약 1억원 수준을 초과하면 전반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을 낮추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조세부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대적 비중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사업소득의 투명성과 연관이 있는데 안중석 외(2010)에 따르면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을 포함할 경우, 사업소득의 형태가 세부담 측면에서 다른 형태

에 비해 일관되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악률 수준과 최근 개선 노력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취업자 중 자영사업 근로자 비중과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법인 부문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소득구조는 세 부담 격차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시계열로 인해 분석의 한계는 있으나 거시자료 분석 결과 법인소득 비중은 세율 격차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 수 비중과 법인의 자산이익률은 그렇지 않았다. 세율 격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와 함께 신규 창업법인만을 분리해서(법인 수 비중 분석)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별 납세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법인 단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율 격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소유자-경영인은 세율 격차에 확대에 대해 자산 이동으로 세 부담을 낮추어 왔다. 즉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부문 자산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인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였다. 자산의 이동은 결국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동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법인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유자-경영인의 모든 법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소유주-경영형태의 법인 (조정)자산규모(2009년 기준)의 2.89%에 달하는 수준이다. 동 추정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35→38%)의 영향을 살펴보면 동 조치는 소득-법인세 세율 격차를 3%p 확대시키므로 법인부문의 자산을 기준연도 대비 1.99%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증가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법인 자산증가분 × 소유주-경영 법인 자산이익률(2009년 0.05%))만큼 소득세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한 전체 세수는 소득 이동이 없을 경우보다 소득 이동분에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격차를 곱한 만

کم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별 세목별 세수는 더 크게 변화하게 된다. 소득세 세수는 소득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세수 증가분보다(이동 소득세원 \times 한계세율(38%)) 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면 법인세수는(이동 소득세원 \times 한계세율(23%)) 늘어나게 되어 전체 세수는 소득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세수 증가분보다 (이동 소득세원 \times 세율 격차(15%))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개별 세목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기대한 세수효과를 얻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를 확대시키므로 고소득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영업자들의 법인 전환 혹은 법인 소유자-경영인의 경우 자산 이동을 통해 소득세원을 법인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법인세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두 세목의 실효세율 차이만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변화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자산 이동으로 인한 소득 변화는 소득구분의 변화이므로 궁극적인 소득분배의 변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소득 이동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높임과 함께 조세정책에 있어 소득세-법인세 세목 간의 세율 격차를 감안할 수 있도록 정책시각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두 세목 간 세율 격차를 확대시키는 논의는 조세의 효율성 비용을 확대시키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 세목에 대한 세율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토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법인 납세관련 자료의 확대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여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2011 조세개요』, 2011.
- 법제처, 『법령통계시스템』, 2013. 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3. 6.
- 안중석·성명재·전병목·정재호·박명호·우석진·빈기범,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전병목,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KOSIS)』, 2013. 6.
-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 “Income Shifting in Sweden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3:12 Rules,”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12.
-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 “Small Corporations’ Income Shifting Through Choice of Ownership Structure—A Norwegian Case,” *Finnish Economic Papers* vol. 23, no. 2, 2010.
- Chetty, Raj and Emmanuel Saez, “Dividend Taxes and Corporate Behavior. Evidence from the 2003 Dividend Tax Cu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2005, pp. 791~833.
- Chetty, Raj, Adam Looney, and Kory Kroft, “Salience and Taxation: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9, 2009, pp. 1145~1177.
- Egger, Peter, “Christian Keuschinigg and Hannes Winner,

- Incorporation and Taxation: Theory and Firm-level Evidence,” Discussion paper no. 2008-20,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t. Gallen, 2008.
- Finkelstein, Amy, “EZ-Tax: Tax Salience and Tax R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 2009, pp. 969~1010.
- Fjarli, Eric and Diderik Lund, “The Choice between Owner’s Wages and Dividends under the Dual Income Tax,” *Finnish Economic Papers* vol. 14, no. 2, 2001.
- Gentry, William, “Taxes, Financial Decisions and Organizational Form: Evidence from Publicly Traded Partnership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3, 1994, pp. 223~244.
- Goolsbee, Austan, “Taxes, Organizational Form and the Dead Weight Los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 1998, pp. 143~152.
- Goolsbee, Austa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Evidence from State Organizational Form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2283~2299.
- Gordon, Roger and Jeffrey MacKie-Mason, “Tax Distortions to the Choice of Organizational 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5, 1994, pp. 279~306.
- _____, “The Importance of Income Shifting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Tax Policy,” *Tax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Edited by Martin Feldstein, James R. Hines Jr., R. Glenn Hubbar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 29~38.
- Gordon, Roger and Joel Slemrod, “Are “Real” Responses to Taxes Simply Income Shifting between Corporate and Personal Tax Bases?,” NBER Working Paper 6576, 1998.
- Kleven, Henrik, Martin Knudsen, Claus Kreiner, Soren Petersen, and Emmanuel Saez, “Unwilling or Unable to Cheat?”

Evidence from a Tax Audit Experiment in Denmark,”
Econometrica 79, 2011, pp. 651~692.

Saez, Emmanuel, Joel Slemrod and Seth Giert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 2012, pp. 3~50.

Sandmo, Agnar, “The Theory of Tax Evasion:A Retrospective View,” *National Tax Journal* 58, 2005, pp. 543~663.

Slemrod, Joel, “Income Creation or Income Shifting? Behavioral Responses to the Tax Reform Act of 1986,” *American Economic Review* 85, 1995, pp. 175~180.

Stiglitz, Joseph, “The General Theory of Tax Avoidance, Evasion, and Administration,” *National Tax Journal* 38, 1985, pp. 325~338.

<국문요약>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본 연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일차적인 납세자의 차이(개인과 법인)로 인해 분리 운영되는 두 세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개인사업체의 법인화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상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업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과 배당 각각 50%보상형태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 1억원 이하에서는 소득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우열 변화가 심하였으나 1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이 낮은 대안이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유주-경영자 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크기는 세율 격차 1%p 확대로 소유자 경영형태 법인의 자산을 약 2.8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 이동의 존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정책 결정 시 두 세원 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Abstract>

Income Shifting between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Bases

Byung Mok Jeon

This study analyzes income shifting between personal and corporate tax bases. Though two taxes are the same sort/type of taxes on income, they are treated as a completely different tax in researches and policy discussions. I test the possibility of income shifting between those two taxes. According to the tax laws, the Korean government gives tax favor to wage-dividend mixed remuneration over pure non-corporate business income, dividends, and pure wage once the income exceeds 100 million Korean won. If the income is less than 100 million Korean won, no type of remuneration dominates. Using Workplace Panel Survey data, I test income shifting hypothesis implied by tax laws. According to the results, I can find asset shifting between personal and corporate tax bases. As the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wo taxes increases 1 percent point, the asset of owner-manager firms increases 2.89%.

〈저자약력〉

전병목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지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3-03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전병목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3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75-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4,000원